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 선람 | 기관(부서)의 장 |
|---|---|
| | |

제6599호 2022년 1월 6일(목)

**경 상 북 도**

## ■ 조 례

○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27호) ····· 8

| 회람 | | | | | | | | |
|---|---|---|---|---|---|---|---|---|
|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28호) ····· 12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29호) ····· 14

○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0호) ····· 25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1호) ····· 35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2호) ····· 41

○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3호) ····· 45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4호) ····· 47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5호) ····· 58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6호) ····· 61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7호) ····· 64

○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8호) ····· 66

○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39호) ····· 71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0호) ····· 74

○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1호) ····· 77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2호) ····· 82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3호) ····· 84

○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4호) ····· 88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5호) ····· 92

○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6호) ····· 107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7호) ····· 110

○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8호) ····· 114

○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49호) ····· 119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650호) ····· 123

## ■ 고 시

○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호) ····· 12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호) ····· 129

○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2호) ····· 130

○ 경산1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3호) ····· 153

○ 경산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4호) ····· 176

○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5호) ····· 196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6호) ····· 219

## ■ 공 고

○「전기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5호) ····· 221

○「전기공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호) ····· 225

# 시 군

## ■ 고 시

○ 구미 도시관리계획(교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2-1호) ····· 231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2-2호) ····· 267

○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2-3호) ····· 269

○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22-1호) ····· 271

## ■ 공 고

○ 경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2-21호) ····· 275

○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성주군 공고 제2022-8호) ····· 277

◈◈◈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27호**

#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의 교육연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 · 직무교육 · 교양교육 ·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 ·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및 운영 등은 의원 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 ·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28호**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경상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③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경상북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⑤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⑥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⑦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2.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⑧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29호**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경상북도 및 시·군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

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

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 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⑤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 대민관계 | 대내관계 |
|---|---|
|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br>○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br>○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br>○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br>○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br>○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br>○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br>○ 찾아오는 주민의 우선적으로 맞이한다.<br>○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br>○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 시간을 엄수한다<br>○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br>○ 근검절약한다.<br>○ 남에게 겸손한다.<br>○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br>○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br>○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br>○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br>○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br>○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별표 4]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5]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10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br>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br>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0호**

#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

지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처장이 한다.

③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

④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공 적 조 서

<table>
<tr><td>(1)성 명</td><td colspan="7"></td><td colspan="2">(한 자)</td></tr>
<tr><td rowspan="2">(2)주민등록<br>번 호<br>(생년월일)</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3)군번<br>(군인의 경우)</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4)국적<br>(외국인의 경우)</td><td></td></tr>
<tr><td>(5)주 소</td><td colspan="9"></td></tr>
<tr><td>(6)직 업</td><td colspan="3"></td><td>(7)소 속</td><td colspan="4"></td></tr>
<tr><td>(8)직 급</td><td colspan="2"></td><td>(9)직 위</td><td></td><td>(10)대외직명</td><td colspan="3"></td></tr>
<tr><td>(11)근무기간</td><td colspan="3"></td><td>(12)공적분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10">(13)공적요지(50자 내외)</td></tr>
<tr><td>(14) 추천훈격</td><td colspan="3"></td><td>(15) 추천순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10">조 사 자</td></tr>
<tr><td>(16)소 속</td><td colspan="4"></td><td>(17)직 위</td><td colspan="3"></td></tr>
<tr><td>(18)직 급</td><td colspan="4"></td><td>(19)성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10">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br><br>년 월 일<br><br>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td></tr>
</table>

(뒷면)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 |
|---|---|---|---|
| (20) 년 월 일 | (21) 이 력 | (22) 년 월 일 | (23) 이 력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 |
| (24) 년 월 일 | (25) 내 용 | (26) 년 월 일 | (27) 내 용 |
| | | | |
| | | | |
| (28) 공 적 사 항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 의결서

## 1. 주 문

다음 기재된 을 아래와 같이 한다.

가.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나. 표창종류

## 2. 이 유

별첨 공적조서에 의하여 그 공적내용을 심사한 결과, 경상북도의회 포상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별지 제6호서식]

# 포 상 대 장

| 호수 | 포상 연월일 | 포상 종별 | 포상 기관 | 피포상자 | | | |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 기념품 또는 부상 |
|---|---|---|---|---|---|---|---|---|---|
| | | | | 직위 또는 직명 | 소속 또는 주소 | 성별 | 성명 | | |
| | | | | | | | | | |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1호**

#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매점, 북다방, 건강증진센터, 휴게실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7. “선택 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8.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9.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 ·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용 ·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도·시군·시군의회 전출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담당 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의회사무처”를 “사업소”로 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2호**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람

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편의지원 및 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적용 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3호**

# 경상북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공휴일 시험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4호**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경상북도와 시·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홈페이지, 경상북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5조 및 제16조)을 삭제한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

| | | |
|---|---|---|
| 청구인의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체류지)<br>(전화번호 : ) |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 |
| 이유 |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 ]신청 [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 수수료 없음 |
|---|---|---|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br>(거소·체류지) | (전화번호 : ) | |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br>(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
| 서명요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br>(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 리 기 간 |
|---|---|---|
| | | |

| | | |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 수임자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 | | | |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br>(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 |
|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br>(거소·체류지) | (전화번호 : ) | | |
| 수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br>(거소·체류지) | (전화번호 : ) | |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br>(거소·체류지) | (전화번호 : ) | | |
| |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경상북도 ○○시·군 ○○읍·면·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청구인명부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br>(거소·체류지) | 서명 또는<br>날인 | 서명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거소・체류지)<br><br>(전화번호 : ) |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br>(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
| 신청 취지 | | |
| 신청 사유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5호**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총일수)**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임시회 소집)** 법 제54조제3항에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을 말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장이 발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6호**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경상북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임원은 상임위원회로 한정한다.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4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제6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7호**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의회”를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활동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

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고서”를 “심사보고서”로, “한다.(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활동보고서”를 “심사보고서”로, “한다.(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8호**

#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도 소속 노동자
2.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관련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임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생활임금 담당 실·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출자·출연기관의 장

4.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위원회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의 생활임금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39호**

#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군별 운행되는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행복택시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
2. 마을현황 조사서
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5. 운행요금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6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 및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명칭)**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규정한 행복택시의 고유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고유명칭 앞에 ‘경북’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0호**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 · 관광시설”을 “문화·체육·관광시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를 “재위탁 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위탁”을 “재계약”으로,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을 “받아야 하며, 재위탁 시에는 매 2회차 마다”로 한다.

**제7조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탁자 선정방식 및 재계약 시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

3. 제16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

6.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2조제3항제2호** 중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협약체결)”을 “(계약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계약을 체결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서”를 “계약서”로, “협약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0조의 지휘·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위탁협약사항”을 “위탁계약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에 반영하여 성과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민간위탁 되거나 재계약·재위탁 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되거나 재계약·재위탁 되어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1호**

#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경사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 | | |
|---|---|---|
| 의견제출인<br><br>※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성명(남, 여) [ ] 대표자<br>※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공동 의견제출 |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명 |
| 의견<br>※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
| 참고자료<br>※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자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2호**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을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도시 계획과의 제3호의 근거법령란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3호**

#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치료 및 법률 지원

2.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

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4호**

#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 “공중위생”이란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4. “위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나.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5. “영양사 및 조리사”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2. 식품·공중위생 관련 대학 또는 연구시설

3. 영양사 및 조리사 등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등 지원

2. 위생업소의 교육·홍보와 육성·역량강화 및 조사연구

3. 위생업소의 지역 브랜드 육성과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 지원

4.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6.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8. 음식거리 지정 및 전통ㆍ우수음식점 발굴ㆍ육성

9. 그 밖에 도지사가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식품ㆍ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립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식품·공중위생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본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5호**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啓發)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경상북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도민 등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도내 시·군에서 심사·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8. “생활공감정책 제안”이란 도정 또는 정부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업무에 즉시 반영 가능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공무원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 제안은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공모제안의 모집)** 도지사는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기간 연장, 공모결과 발표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도민제안의 발굴 등)** ①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도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 인정
5.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지방행정ㆍ일자리ㆍ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관광ㆍ농축산ㆍ보건복지ㆍ환경산

림ㆍ여성정책ㆍ건설도시ㆍ소방재난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관련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

2. 그 밖에 제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과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 등이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내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 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우수제안 확정 또는 공모전 수상작 선정이전에 14일 이상 제안 제목 및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으로의 간주)**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1.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2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제안자의 이의 신청이나 재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도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경상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3조(인사상 특전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

된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에 포상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시장·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25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2. 은상 :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 동상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 입선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시상을 실시하였더라도, 표절·도용이 드러날 경우 그 포상과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공무원 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년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8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9조(그 밖의 보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우수 시·군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도가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리기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우수제안의 확산)**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제안교육 실시 및 평가)** 도지사는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시군 제안제도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 창안등급 | 인사특전의 종류 | 인사특전 대상자 |
|---|---|---|
| 금상<br>·<br>은상<br>·<br>동상 | 특별승진 | ·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br>· 기능직지방공무원<br>·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
| | 승진 우선권 부여 | · 5~6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 | 특별승급 | ·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br>·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br>·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
| |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
| 장려상<br>·<br>노력상 | 특별승급 | · 경력직지방공무원<br>·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br>※ 다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 입 선 | 실적가점 부여 | |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승진우선권 부여”란 공무원이 제안하여 창안등급이 동상이상 채택된 경우 그 제안공무원이 승진배수 범위내에 속하는 때에 우선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 상여금지급 기준액표

| 지 급 대 상 | | 상여금 지급기준액 |
|---|---|---|
| 예산 절감 | 1,000만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
| |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
| | 1억원 초과 |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
| 행정 개선 |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br>・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br>・미 : 500만원 미만 |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6호**

#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 목표 및 방향

2. 산림문화·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휴양자원 활용 방안

4. 산림문화·휴양자원 관리·활용 시책

5. 산림문화·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3. 산림문화·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지사는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7호**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에 대해 컨설팅, 경영 및 농어업기술 교육, 영농·영어 정착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대한 선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8호**

#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

②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고조사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 또는 인·허가청, 각 시·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8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공인시험이나 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공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1조(권고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청과 관계인에게 개선대책 수립과 조치를 지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49호**

#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3(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11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녹색건축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7(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건축센터(이하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등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2022년 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4650호**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하는 간판(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은 건물당 각 1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를 “제1항제4호·제6항제2호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등(이하 “홀로그램등”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광고물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에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등의 영상표시장치와 그 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2.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홀로그램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 · 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에 관하여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호**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고물등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등으로”를 “광고물의 설치 ·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별표 1] <전문개정>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제21조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 시설의 종류 |
|---|---|
|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br>-「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br>-「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br>-「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br>-「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br>-「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br>-「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br>-「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br>-「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br>-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br>-「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
|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br>-「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b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b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br>-「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br>-「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br>-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br>-「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 공공·공용 분야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br>-「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br>- 종합사회복지관<br>-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br>-「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br>-「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br>-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br>-「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법인묘지<br>-「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br>-「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br>-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br>-「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br>-「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br>-「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br>-「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경상북도 고시 제2022-10호

#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지정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구 분 :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지정**

**2. 변경내역**

□ 수입증지요금계기 보급현황

| 연번 | 발행기관명 | 발 행 장 소 | | 계기관리 책 임 자 | 계 기 고유번호 |
|---|---|---|---|---|---|
| | | 당 초 | 변 경 | | |
| 1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 롯데푸드(주) |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 토종닭주식회사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 | GT700-4074 |

**3. 발행개시일 : 2022. 1. 6.**

경상북도 고시 제2022-11호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하천명 | 점용 목적 |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 위 치 | 점 용 자 | | 점용 기간 |
|---|---|---|---|---|---|---|
| | | | | 주 소 | 성 명 | |
| 지방 하천 (위천) | 교량 설치 | **<팔등교>** L=360.0m, B=8.9m (영구 13,509㎡) (일시 2,930㎡)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4-1번지 일원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 의성군수 (안전건설과장) |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4.09.30. |

경상북도 고시 제2022-12호

#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단밀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농공단지 일반현황

### 1. 농공단지 개요 (변경)

○ 명 칭 : 단밀농공단지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 면 적 : 144,346.2㎡

○ 관리기관 : 의성군수

(단위 : ㎡)

| 구분 | |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비고 |
|---|---|---|---|---|---|---|---|
| 면적(%) | 기정 | 144,346.2 (100.0%) | 105,194.9 (72.9%) | - | 23,419.9 (16.2%) | 15,731.4 (10.9%) | |
| | 변경 | 144,346.2 (100.0%) | 105,194.9 (72.9%) | | 25,004.9 (17.3%) | 14,146.4 (9.8%) | |

## 2. 조성목적 (변경없음)

○ 농촌의 농외소득 및 농가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지향적인 토지이용

##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1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08년 ~ 2010년

## 4. 추진경위 (변경)

○ 2008. 4. 10 :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의성군 고시 제2008-174호)

○ 2008. 9. 18 :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의성군 고시 제2008-468호)

○ 2008. 11. 24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08-572호)

○ 2009. 2. 3 : 공사착공

○ 2009. 10. 28 : 분양공고 및 분양시작

○ 2009. 11. 2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9-476호)

○ 2010. 5. 2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199호)

○ 2010. 12. 28 : 공사준공

○ 2011. 2. 15 : 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승인(변경)고시 (의성군 고시 제2011-15호)

○ 2011. 4. 21 : 분양완료

○ 2011. 7. 14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267호)

○ 2019. 10. 24 : 단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계획(변경)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19-319호)

○ 2021. 12. 07 : 단밀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1-128호)

○ 2021. 12. 20 : 단밀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1-132호)

## 5. 분양현황 (변경없음)

| 구분 | 총면적(㎡) | 분 양 현 황 | | | 조성 기간 | 조성 기관 |
|---|---|---|---|---|---|---|
| | | 분양 | 미 분 양 | 계 | | |
| 계 | 144,346.2 | 105,194.9 | - | 105,194.9 | 2008 - 2010 | 의성군 |
| 산업시설 | 105,194.9 | 105,194.9 | - | 105,194.9 | | |
| 지원시설 | - | - | - | - | | |
| 공공시설 | 25,004.9 | - | - | - | | |
| 녹지시설 | 14,146.4 | - | - | - | | |

## 6. 입주현황 (변경)

| 구 분 | 입주업체 수(개) | | | 면 적 (㎡) | | |
|---|---|---|---|---|---|---|
|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 변경전 | 13 | - | 13 | 105,194.9 | - | 105,194.9 |
| **'21. 12월 현재** | **16** | **-** | **16** | **105,194.9** | **-** | **105,194.9**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7. 입지여건 (변경)

| 시설명 | | 변경전 | 2021. 12월 현재 | 관리기관 |
|---|---|---|---|---|
| 교통 | 도로 | ○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17㎞) 이용<br>○ 중앙고속도로 의성IC(40㎞) 이용<br>○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27㎞) 이용<br>○ 국도 25호선(구미 ↔ 상주) | ○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의성IC(17㎞) 이용<br>○ 중앙고속도로 의성IC(40㎞) 이용<br>○ 상주영천고속도로 도개IC(27㎞) 이용<br>○ 국도 25호선(구미 ↔ 상주) | - |
| | 철도 | ○ 중앙선 의성역 | ○ 중앙선 의성역 | - |
| | 항공 | ○ 대구공항 이용 | ○ 대구공항 이용 | - |
| | 항만 | - | - | - |
| 용 수 | | ○ 의성군 상수도 | ○ 의성군 상수도 | 의성군 |
| 전 력 | | ○ 2,904㎾/H | **○ 3,320㎾/H** | 한국전력공사 |
| 통 신 | | ○ KT의성지점 | ○ KT의성지점 | 한국통신 |
| 환경 | | ○ 오·폐수 유입량 : 183㎥/일 | ○ 오·폐수 유입량 : 194.2㎥/일 | 의성군 |

# 2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지역 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주민 고용으로 농외 소득 증대

○ 농공단지 용도별 면적 구획으로 용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환경보존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2. 농공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단위 : ㎡)

| 구분 | 총면적 | 산업시설 | 공공시설 | 녹지시설 | 비고 |
|---|---|---|---|---|---|
| 기정 | 144,346.2<br>(100%) | 105,194.9<br>(72.9%) | 23,419.9<br>(16.2%) | 15,731.4<br>(10.9%) | |
| 변경 | 144,346.2<br>(100.0%) | 105,194.9<br>(72.9%) | 25,004.9<br>(17.3%) | 14,146.4<br>(9.8%) | |

## 3. 입주대상 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별표 1) (변경)

■ 기정 : 전기、전자 제조업, 기계、조립금속 제조업, 기타 제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등 (별표 1과 같음)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규 및 증설승인 불가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변경 :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등 (별표 1과 같음)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의 경우 신규 및 증설승인 불가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제외업종 (변경없음)

■ 환경영향업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업종

■ (별표1)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 제외업종

※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입주자격 (변경)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별표1 입주제외 대상 업종이 아닐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입주 우선순위(변경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 유망업체를 우선 입주

■ 주변 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한,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배출업체의 공해저감 유도

■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분양용지의 불법 전매, 장기 유휴화 등의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철저

■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방지도활동 강화

## 4. 생산 · 수출 및 고용전망 (변경없음)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생산활동 및 수출증대 | ○ 연도별 · 품목별 생산 · 수출계획 수립<br>○ 생산 · 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 설명회등 개최<br>○ 품목별 ·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br>○ 기타 생산 · 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
|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 공장자동화 유도<br>○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br>○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br>○ 해외인증 획득 지원 |
| 고용전망 및 근로자 복지사업 | ○ 농가의 유휴노동력(주부, 고령자)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br>○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br>○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지방병무청과 협의)<br>○ 취업상담실 운영<br>○ 유휴인력(주부, 고령자) 활용방안 강구<br>○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br>○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 5. 임금 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변경없음)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생산 · 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휴노동력(부녀자, 노령자, 실습생)의 적극적인 채용

○ 농번기에는 조업 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사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 농 · 식품류 우선공급

## 6. 입주 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 (변경)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 수요 전망 (변경)

| 구분 | 입주 업체수 | 고용 인원 (명) | | | 비고 |
|---|---|---|---|---|---|
| | | 계 | 기능인력 | 단순노무 | |
| 기정 | 13 | 150 | 150 | - | |
| 변경 | 16 | 210 | 210 | - | |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지역별 인력 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변경없음)

| 구 분 | 인 구 수(명) | | | 취업가능인력 (추 정) |
|---|---|---|---|---|
| | 총계 | 농가인구수 | 비농가인구수 | |
| 의성군 | 55,888 | 24,550 | 31,338 | 2,700명 |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관내 제조업체 현황 (변경없음)

| 구분 | 계 | 섬유 | 금속 | 화공 | 비금속 | 식품 | 기계 | 고무 플라스틱 | 전자 | 목재 출판 | 기타 |
|---|---|---|---|---|---|---|---|---|---|---|---|
| 업체수 (개소) | 144 | 12 | 8 | 18 | 32 | 45 | 13 | 6 | 5 | - | 5 |
| 고용인원 | 1,787 | 164 | 109 | 130 | 561 | 457 | 233 | 40 | 35 | - | 68 |

※ 자료출처 : 의성군 경제투자과

## 7.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 (변경없음)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생산및 수출증대 |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br>○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br>○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br>○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
|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 공장자동화 유도<br>○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br>○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강화<br>○ 해외인증 획득 지원 |
| 경쟁력 강화 | ○ 업체간 상호정보교환 및 제품 판매지원<br>○ 업종별·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br>○ 물류공동화 추진 및 시설지원<br>○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

##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계획 (변경)

○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획 (변경)

(단위 : ㎡)

| 구분 | 총면적 | 산업시설 | 공공시설 | 녹지시설 | 비고 |
|---|---|---|---|---|---|
| 기정 | 144,346.2<br>(100%) | 105,194.9<br>(72.9%) | 23,419.9<br>(16.2%) | 15,731.4<br>(10.9%) | |
| 변경 | 144,346.2<br>(100.0%) | 105,194.9<br>(72.9%) | 25,004.9<br>(17.3%) | 14,146.4<br>(9.8%) | |

○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표 2참조 (변경)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지붕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 공원(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등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현황) : 별표3참조 (변경)

■ 소규모 단지이므로 입주 시 적정배치

■ 기존환경오염이 적은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 배치

[기정]

| 구 분 | 업 종 별 | | | |
|---|---|---|---|---|
| | 계 | 기계、조립금속 | 전기、전자 | 기타 제조업 |
| 업체수(개수) | 13 | 3 | 3 | 7 |
| 면적(㎡) | 105,194.9 | 14,824.6 | 7,277.4 | 83,092.9 |

[변경]

| 구 분 | | 면적 (㎡) | 업체수 | 비고 |
|---|---|---|---|---|
| 산 업 시 설 구 역 | | 105,194.9 | 16 | |
| 10 | 식료품 제조업 | 10,258.7 | 1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2,153.8 | 1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2,951.5 | 2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7,877.3 | 1 | |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8,749.4 | 2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075.2 | 1 | |
| 13<br>2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br>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698.5 | 2 | |
| 20<br>22<br>26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153.1 | 3 | |
| 20<br>27<br>28<br>3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br>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br>전기장비 제조업<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76.3 | 2 | |
| 27<br>28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br>전기장비 제조업 | 3,701.1 | 1 | |

## 9.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 기본방향 (변경없음)

■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협동화, 자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 산활동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 제공

■ 입주업체간 협의회의 활성화로 협력 및 애로사항 공동해결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계획 (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기정]

| | | | |
|---|---|---|---|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054-830-6516) | | |
| **관리기관<br>운영기관** | 의성군 경제투자과<br>전문기관 위탁운영 | 관리인원 | 1명 |
| **차집방식** | 분 류 식 | 차집관로 | 주 관 거 : D300mm |
| **수처리방식** | SMMIAR 공법 | 슬러지처리방식 | 농축 ➡ 탈수 ➡<br>위탁처분 |
| **설계용량** | 200㎥/일 | 유 입 량 | 183.5㎥/일 |

[변경]

| | | | |
|---|---|---|---|
| **위 치** |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31번지 일원 (054-830-6516) | | |
| **관리기관<br>운영기관** | 의성군 경제투자과<br>전문기관 위탁운영 | 관리인원 | 1명 |
| **차집방식** | 분 류 식 | 차집관로 | 주 관 거 : D300mm |
| **수처리방식** | SMMIAR 공법 | 슬러지처리방식 | 농축 ➡ 탈수 ➡<br>위탁처분 |
| **설계용량** | 200㎥/일 | **유 입 량** | **194.2㎥/일** |

■ 목표년도 수질 현황(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 항 목 (단위 : ㎎/ℓ ) | | | | |
|---|---|---|---|---|---|---|
| | | BOD | COD | SS | T-N | T-P |
| 설계수질 | 유입수 | 200 | 200 | 200 | 40 | 20 |
| | 방류수 | 8 | 15 | 5 | 13 | 0.3 |
| 운영수질 | 유입수 | 213 | 196 | 219 | 42.5 | 21.5 |
| | 방류수 | 1 | 1 | 1 | 2.24 | 0.05 |
| 법정방류수질 | | 10 | 40 | 10 | 20 | 0.3 |
| 방 류 수 역 | | 수정천(소하천) → 낙동강 | | | | |

■ 운영계획 (변경없음)

| 구 분 | | 내 용 | 비 고 |
|---|---|---|---|
| 처리가능오염물질 | | BOD, COD, SS | 오염물질 및 폐수발생량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의 내용으로 한다 |
| 유입기준 | 처리가능 오염물질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 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 |
| | 처리불가능 오염물질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특례’ 지역, 2,000㎥/일 미만)이하로 유입 | |
| | 유 입 량 | 총 200㎥/일 이하 | |

## 10.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농공단지 관리계획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안전관리 | ○ 안전관리 예방점검<br>○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
| 토지이용효율 극 대 화 | ○ 사업부진업체 정상화 추진<br>○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br>○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타용도 사용규제 |
| 환경관리 |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환경보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br>○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 단지방위체계 향 상 | ○ 단지 방호체계 수립<br>○ 지역단위 방위협의체 운영 참여<br>- 예비군, 민방위대 등 운영기관 협조 |

○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
| 생산 및 수출증대 |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br>○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등 개최<br>○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br>○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
| 경영 및 기술 개발지원사업 | ○ 공장자동화 유도<br>○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br>○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br>○ 해외인증 획득 지원 |
| 중소기업운영 자금융자지원 | ○ 기업 운영자금 부족업체 융자금 추천 지원<br>■ 3억원 까지 융자금 추천 지원(매출규모별 차등지원)<br>■ 이자차액 1년간 3%지원(시,도비)<br>■ 매월 1 회 융자금 추천 지원(설,추석달은 제외) |

**1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5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 1】

# 입 주 대 상 업 종

(기 정)

| ’19. 9. 현재 | | | | 향 후 계 획 | |
|---|---|---|---|---|---|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 | 업체 수 | 면 적 (㎡)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 입주업종중 제 외 업 종 |
| 계 | | 13 | 105,194.9 | ■ 10. 식료품 제조업<br>■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br>■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r>■ 24. 1차 금속 제조업<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br><br>■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br><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25<br>29 | 기계·조립금속 제조업 | 3 | 14,824.6 | | |
| 26<br>28 | 전기·전자 제조업 | 3 | 7,277.4 | | |
| | 기타 제조업 | 7 | 83,09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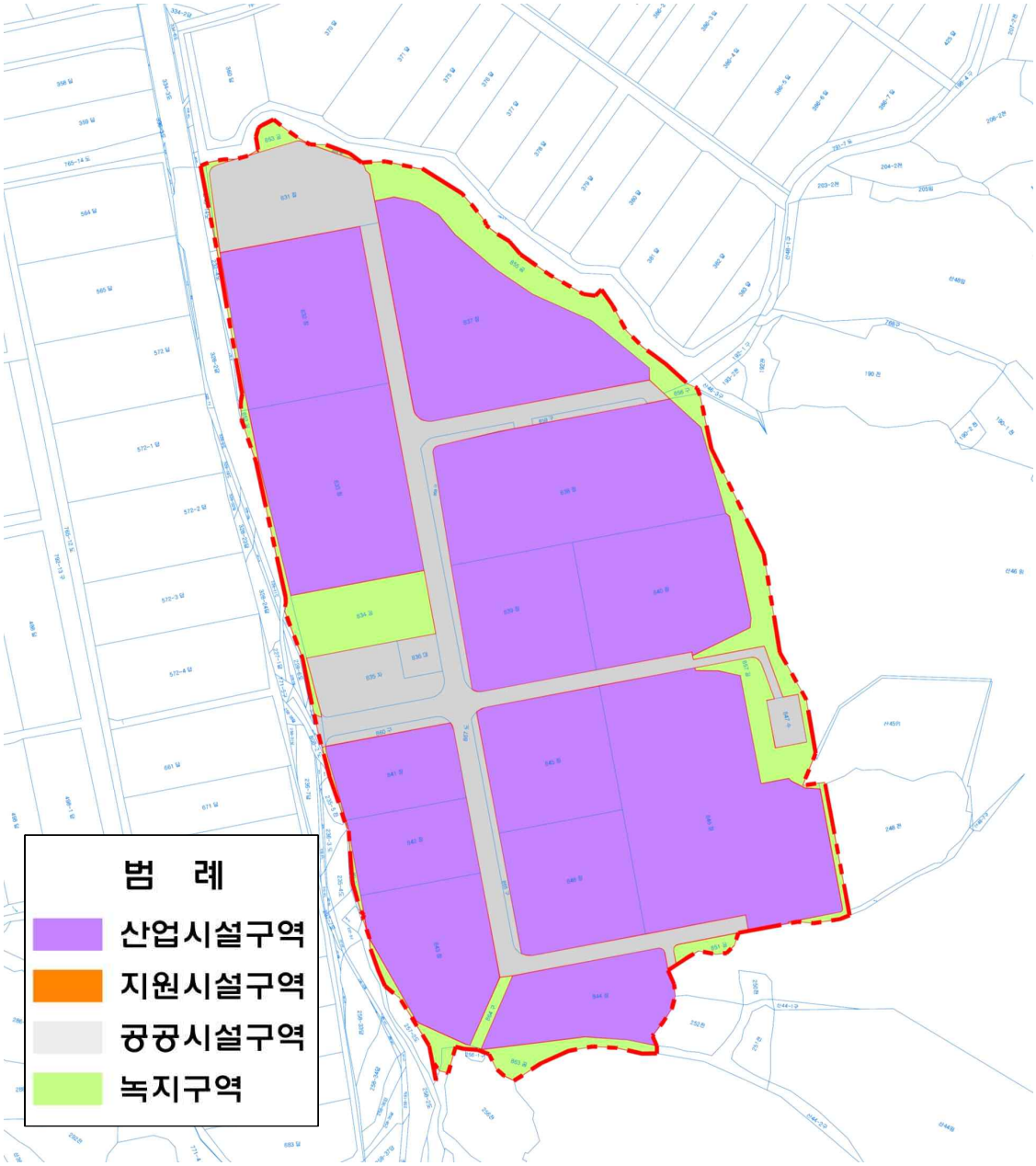
(변 경)

| ’21. 12. 현재 | | | | 향 후 계 획 | |
|---|---|---|---|---|---|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 | 업체수 | 면 적 (㎡) | 입 주 업 종 (산업중분류) | 입 주 업 종 중 제 외 업 종 |
| 계 | | 16 | 105,194.9 | ■ 10. 식료품 제조업<br>■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br>■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br>■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br>■ 24. 1차 금속 제조업<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6811)) 에 한함**<br>■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br><br>■ 폐비닐,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나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종<br><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1 | 10,258.7 |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 | 12,153.8 |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 | 22,951.5 |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 | 7,877.3 | |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 | 8,749.4 |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 | 6,075.2 | | |
| 13<br>2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br>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 | 24,698.5 | | |
| 20<br>22<br>2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br>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 | 5,153.1 | | |
| 20<br>27<br>28<br>3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전기장비 제조업<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 | 3,576.3 | | |
| 27<br>28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전기장비 제조업 | 1 | 3,701.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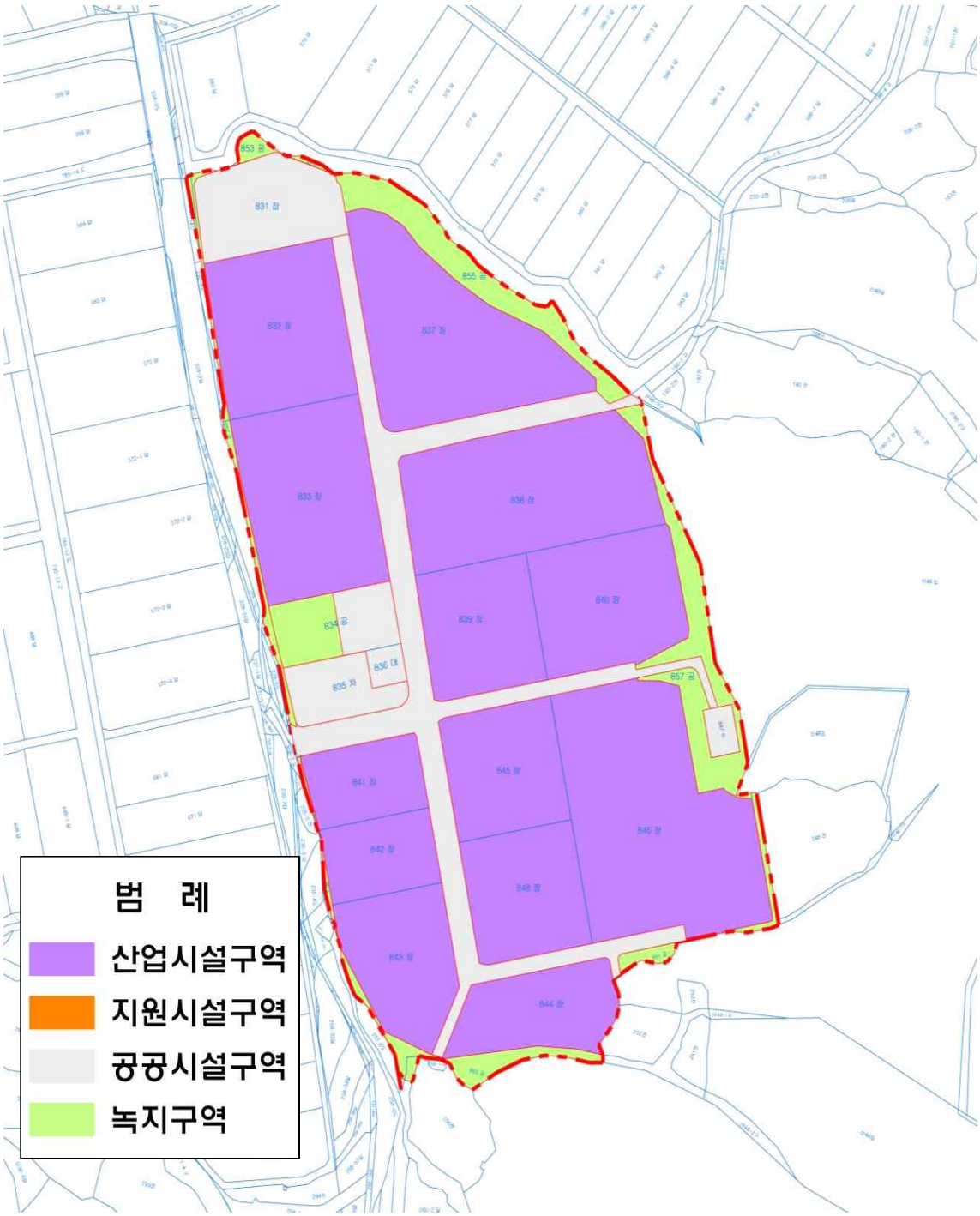
【별표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변경)

# 단밀농공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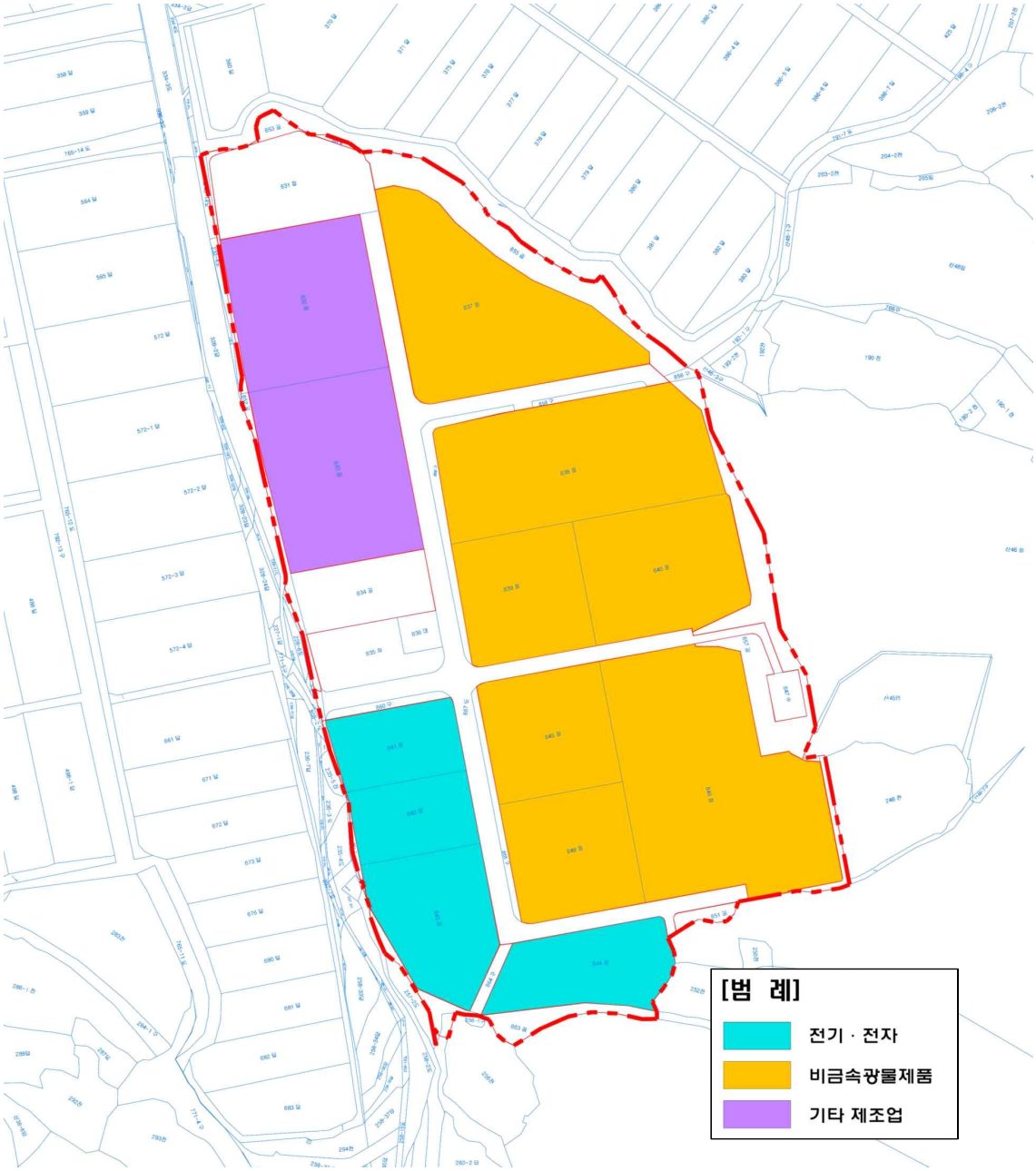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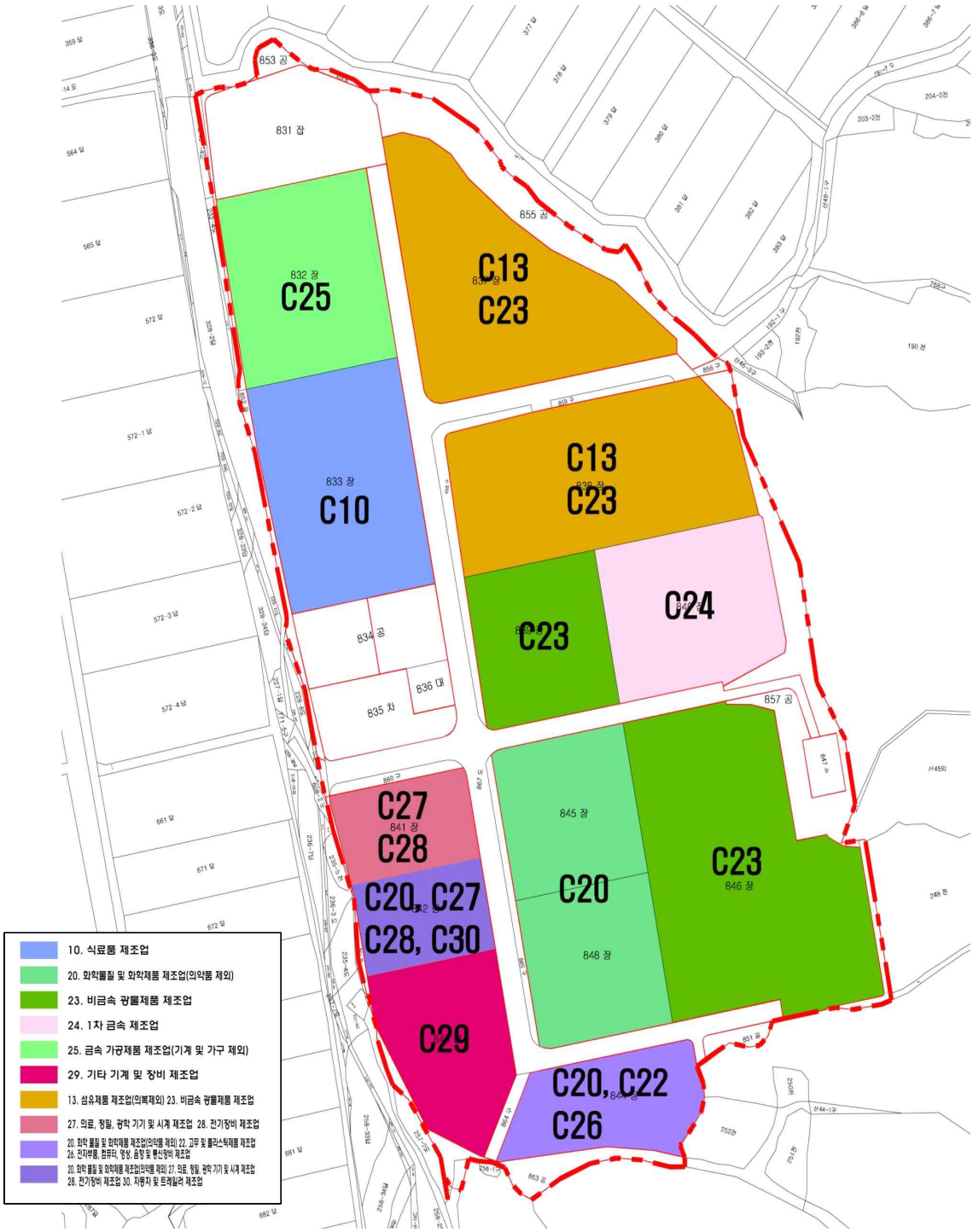
【별표 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 단밀농공단지 업종배치계획도

(기 정)



(변 경)


853 공
831 잡
832 장
C25
855 공
C13
C23
833 장
C10
C13
C23
C23
C24
834 공
835 차
836 대
857 공
C27
841 장
C28
C20, C27
C28, C30
845 장
C20
848 장
C23
846 장
C29
C20, C22
C26
10. 식료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경상북도 고시 제2022-13호

# 경산1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1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산업단지 일반현황(변경)

가. 산업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경산1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대원리, 황제리 일원

○ 면 적 : 1,577,413.7㎡

○ 관리기관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소득증대 기여

다.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경산시)

○ 시행기간 : 1991. 3. 4 ~ 1994. 4.28

라. 추진경위(변경)

○ 1987.10. 공업단지 조성계획 지시 (경북도지사)

○ 1989.10. 4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건설부 고시 제566호)

○ 1990. 2.24 진량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결정 (경상북도 고시 제35호)

○ 1990.11. 9 입주업체선정 (경산군수)

○ 1990.11.22 교통영향평가 협의 (대구직할시장)

○ 1990.12.10 유치지역지정 승인 (상공부 공고 제90-43호)

○ 1991. 1.22 환경영향평가 승인 (환경처장관)

○ 1991. 3. 4 진량공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경상북도 고시 제63호)

○ 1991. 6. 5 진량공업단지 공사 착공 (경산군수)

○ 1991. 9.19 진량공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352호)

○ 1991.12. 3 진량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91-449호)

○ 1993. 9.11 기본계획변경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93-319호)

○ 1994. 4.28 진량공업단지 준공 인가 (경상북도 고시 제94-2호)

○ 1995. 5. 3 관리기본계획 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1995-74호)

○ 1996. 3.27 관리기본계획 개정 (경상북도 고시 제1996-31호)

○ 1997. 6.19 관리기본계획 개정 (경상북도 고시 제1997-114호)

○ 1998.11.16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1998-249호)

○ 1999. 7.12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1999-167호)

○ 2002.12.26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2-413호)

○ 2005. 5.23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5-132호)

○ 2005. 8.16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5-240호)

○ 2006. 6.22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6-203호)

○ 2008. 4. 7 개발계획 변경; 경산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175호)

○ 2008. 4. 7 실시계획 변경; 경산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176호)

(산업단지명칭변경 : 진량지방산업단지 → 경산1일반산업단지)

○ 2008. 9.25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8-446호)

○ 2010. 3. 8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10-79호)

○ **2016. 9. 1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16-228호)**

마. 분양현황(변경없음)

(단위 : ㎡)

| 단지명 | 총면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 | |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 | | 분양 | 미분양 | | | 계 | | |
| | | | 조성 | 미조성 | 소계 | | | |
| 경산1 일반산업 단지 | 1,577,413.7 | 1,149,657.0 | 0 | 0 | 0 | 1,149,657.0 | 1991. 3월 ~ 1994. 4월 (3년간) | 경산시 |

바. 입주현황(변경없음)

(단위 : 개, ㎡)

| 입주업체수 | | | 면 적 | | | 비 고 |
|---|---|---|---|---|---|---|
| 제조업 | 지원기관<br>(근린시설) | 계 | 제조업 | 지원기관<br>(근린시설) | 계 | |
| 194 | 35 | 229 | 1,149,657.0 | 44,295.2 | 1,193,952.2 | |

사. 입지여건(변경없음)

| 시설명 | | 현 재 현 황 | | | | 확충계획 |
|---|---|---|---|---|---|---|
| 교통 | 항공 | • 대구공항 : 22.8 ㎞<br>- 대구 ~ 서울 : 12회 왕복(소요시간 : 50분) | | | | |
| | 철도 | • 경산역(경부선) : 13.2 ㎞<br>• 하양역(대구선) : 6.3 ㎞ | | | | |
| | 도로 | • 경부고속도로 : 4.0㎞(공단 ~ 경산 I.C)<br>• 국도 4호 : 5.3㎞(공단 ~ 하양)<br>• 지방도 919호 : 0.5㎞(공단 ~ 진량) | | | | |
| 용 수 | | • 시설현황 (단위 : ㎥/일) | | | | |
| | | 구 분 | 시 설 용 량 | 비 고 | | |
| | | 공업용수 | 7,000 | 하양정수장 | | |
| | | 생활용수 | 5,000 | 운문댐 | | |
| | | 계 | 12,000 | | | |
| | | - 공단 평균사용량 3,500㎥/일 | | | | |
| 전 력 | | • 시설현황 (단위 : KVA) | | | | |
| | | 구분 | 시 설 내 용 | | | |
| | | | 변전소명 | 시설용량 | 가용출력 | |
| | | 일반전력 | 한전<br>경산전력소 | 120,000 | 100,000 | |
| | | - 공단 평균사용량 50,000KVA/일<br>- 전력소 면적 33,206.3 ㎡ | | | | |

<table>
<tr><th>시설명</th><th colspan="6">현 재 현 황</th><th>확충계획</th></tr>
<tr><td rowspan="3">통 신</td><td colspan="6">• 시설용량</td><td rowspan="3"></td></tr>
<tr><td>국 명</td><td>시설명</td><td>시설수</td><td>가입자수</td><td colspan="2">비고</td></tr>
<tr><td>하양전화국</td><td>RASM</td><td>7,992</td><td>3,900</td><td colspan="2"></td></tr>
<tr><td>단지내<br>도로</td><td colspan="6">• 대 로<br>- L = 3,936 m , - B = 25 ~ 30m<br>• 중 로<br>- L = 709m , - B = 20 m</td><td></td></tr>
<tr><td rowspan="4">하수도시<br>설<br>(폐수시설)</td><td colspan="6">• 경산하수종말처리장</td><td rowspan="4"></td></tr>
<tr><td>종합처리장</td><td colspan="2">차집관거</td><td>처리용량</td><td colspan="2">기 타</td></tr>
<tr><td>1</td><td colspan="2">800㎜ = 4,262 m<br>1,000㎜ = 5,187m</td><td>2001년기준<br>18,501 t/일</td><td colspan="2">폭기조<br>침전기</td></tr>
<tr><td colspan="6">- 계획 최대 오수량 = 7,607 ㎥/일</td></tr>
<tr><td rowspan="9">폐기물<br>처리시설</td><td colspan="6">• 발생량</td><td rowspan="9"></td></tr>
<tr><td>구 분</td><td colspan="4">발 생 량 (톤/일)</td><td>비 고</td></tr>
<tr><td>계</td><td colspan="4">48.08</td><td rowspan="3"></td></tr>
<tr><td>일 반</td><td colspan="4">21.68</td></tr>
<tr><td>지 정</td><td colspan="4">26.40</td></tr>
<tr><td colspan="6">• 처리계획</td></tr>
<tr><td>위 탁</td><td>재 활 용</td><td>매 립</td><td>소 각</td><td colspan="2">계</td></tr>
<tr><td>26.40</td><td>3.82</td><td>10.20</td><td>7.66</td><td colspan="2">48.08</td></tr>
<tr><td colspan="6">- 전체 매립용량 229,500 ㎥<br>- 폐기물 처리장 공단 내 40,125 ㎥</td></tr>
<tr><td>공원</td><td colspan="6">• 근린공원 : 48,331.4 ㎡<br>• 완충녹지 : 48,621 ㎡</td><td></td></tr>
</table>

## 2.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가.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의 적극 유치

○ 업종별 전문화, 계열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배치

○ 노 · 사 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조기 정착

○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변경)

○ 관리대상 산업단지 면적(변경없음)

(단위 : ㎡)

| 산업단지 총면적 | 세 부 면 적 | | | | 비 고 |
|---|---|---|---|---|---|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지 | |
| 1,577,413.7 | 1,149,657.0 | 44,295.2 | 286,509.1 | 96,952.4 | |

○ 입주대상업종(변경)

| | |
|---|---|
| 기정 | • 섬유·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금속·기계장비<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 · 기계장비부품 생산관련)<br>※ 세세분류 22191, 22240 한정 입주<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기타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연소제품제외)<b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r>- 35. 기타발전업(태양에너지발전업)<br>※ 주: 1. 염색, 호부, 피혁제조, 도금, 도장, 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의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br>3. 자동차부품 · 기계장비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일부공정(공정 중 1/3 이내)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 함. |
| 변경 | • 섬유·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금속·기계장비<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 · 기계장비부품 생산관련)<br>※ 세세분류 22191, 22240 한정 입주<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기타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연소제품제외)<b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r>- 35. 기타발전업(태양에너지발전업)<br>**• 부동산업**<br>**- 68.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br>※ 주: 1. 염색, 호부, 피혁제조, 도금, 도장, 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의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br>3. 자동차부품 · 기계장비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일부공정(공정 중 1/3 이내)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 함. |

○ 입주기업체의 자격(변경)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공공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 ·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 1.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임대, 기타)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2.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는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변경)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 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공공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 1.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임대, 기타)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2.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는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 입주제한(변경없음)

- 제한업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기계장비부품 생산 관련 제외)

    ※ 세세분류 22191, 22240 한정 제외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금속 제조업

○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친화적인 업체

○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 인력수급의 지원,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함
-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만,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3년이 경과한 업체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필지 최소면적을 3,300㎡이상으로 하고 분할 경계에 고정식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검토 가능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 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단 별도의 공장 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면적(변경없음)

(단위 : ㎡, %)

| 총면적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지 | 비 고 |
|---|---|---|---|---|---|
| 1,577,413.7<br>(100%) | 1,149,657.0<br>(72.9%) | 44,295.2<br>(2.8%) | 286,509.1<br>(18.2%) | 96,952.4<br>(6.1%) | |

※ 용도별 구획평면도 : 별첨 1

라.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없음)

(단위 : ㎡, %)

| 계 | 공장시설 용도(㎡) | 지식산업 시설용도 (㎡) | 정보통신 산업시설 용도(㎡) | 자원비축 시설용도 (㎡) |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 | 기타(㎡) |
|---|---|---|---|---|---|---|
| 1,149,657.0<br>(100) | 1,149,657.0<br>(100) | 0 | 0 | 0 | 0 | 0 |

마.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 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등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8. 창고시설(입주업체가 자체생산품 보관용도 사용에 한정)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 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단지 전체지원을 위한 시설물(변전소, 배수지 등)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광 발전업을 위한 용도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변경)**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을 위한 용도**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 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등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8. 창고시설(입주업체가 자체생산품 보관용도 사용에 한정)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 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단지 전체지원을 위한 시설물(변전소, 배수지 등)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을 위한 용도**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바. 업종별 공장의 배치(변경없음)**

○ 배치기준

- 미래지향적인 장래유망 업종으로 공장을 배치하여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별(금속·기계장비, 섬유·의복, 기타제조업),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로 조화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개, ㎡)

| 구분 | 금속·기계장비 | 섬유·의복 | 기타제조업 | 계 | 비 고 |
|---|---|---|---|---|---|
| 업체수 | 81 | 73 | 40 | 194 | 기 입주 업체의 업종은 현위치에 한정하여 인정 |
| 면 적 | 585,782.4 | 357,764.7 | 206,109.9 | 1,149,657.0 | |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없음)

○ 운영기본방향

- 입주업체 생산지원을 위한 공공업무와 근로자 편익시설 위주로 설치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시 설 명 | | 계 | | 현재 | | 향후 유치계획 | | 비 고 |
|---|---|---|---|---|---|---|---|---|
| |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
| 공단운영 | 관리공단 | 1 | 7,799.7 | 1 | 7,799.7 | 0 | 0 | |
| 유치 지원기관 | 대구은행 | 1 | 1,005.2 | 1 | 1,005.2 | 0 | 0 | |
| | 주유소 | 1 | 1,596.7 | 1 | 1,596.7 | 0 | 0 | |
| | 소방서 | 1 | 658.9 | 1 | 658.9 | 0 | 0 | |
| | 병원 | 1 | 1,151.5 | 0 | 0 | 1 | 1,151.5 | |
| | 우체국 | 1 | 510.6 | 1 | 510.6 | 0 | 0 | |
| | 통신공사 | 1 | 348.1 | 1 | 348.1 | 0 | 0 | |
| | 가스공사 | 1 | 18,897.1 | 1 | 18,897.1 | 0 | 0 | |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 | 1,000.0 | 1 | 1,000.0 | 0 | 0 | |
| | 근린생활 및 기타지원시설 | 36 | 9,327.0 | 26 | 6,291.9 | 10 | 3,035.1 | |
| | 업무시설 | 1 | 2,000.4 | 1 | 2,000.4 | 0 | 0 | |
| 계 | | 46 | 44,295.2 | 35 | 40,108.6 | 11 | 4,186.6 | |

아. 기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변경없음)

○ 폐기물 처리사업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폐수처리 | 1994년 ~ 계속 | ·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 차집관거(9.4㎞)를 통한 하수 종말처리장 연결 |
| 폐기물 처리 | 1994년 ~ 계속 | · 생활 및 일반쓰레기는 공단 내 매립장활용<br>· 산업 및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
| 대 기 | 1994년 ~ 계속 | · 행정지도를 통한 대기오염 발생량 저감<br>· 방지시설 보완 등<br>· 자동측정시설 및 전광판 설치 운영 |

○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수출목표 달성 | 1994년 ~ 계속 | · 년도별, 품목별 수출계획 수립<br>· 수출애로 타개 위한 업종별 간담회, 설명회 개최<br>· 품목별, 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br>· 기타 정보제공 |
| 경영 및 기술 개발 지원사업 | 1994년 ~ 계속 | · 공장 자동화 유도<br>·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br>·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강화 |

○ 고용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사업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고용안정 | 1994년 ~ 계속 | · 시영어린이집 설치 운영<br>· 취업상담실 운영<br>· 유휴인력(주부, 고령자 등)활용 방안 강구<br>· 노·사 해외연수 추진 |
| 산업평화 | 1994년 ~ 계속 | · 노·사 관계교육 및 간담회 통한 협조방안 강구<br>· 유관기관 단체와의 노·사 문제 대책협조 체제 구축<br>· 모범근로자 및 산업평화에 기여한 노조원포상 추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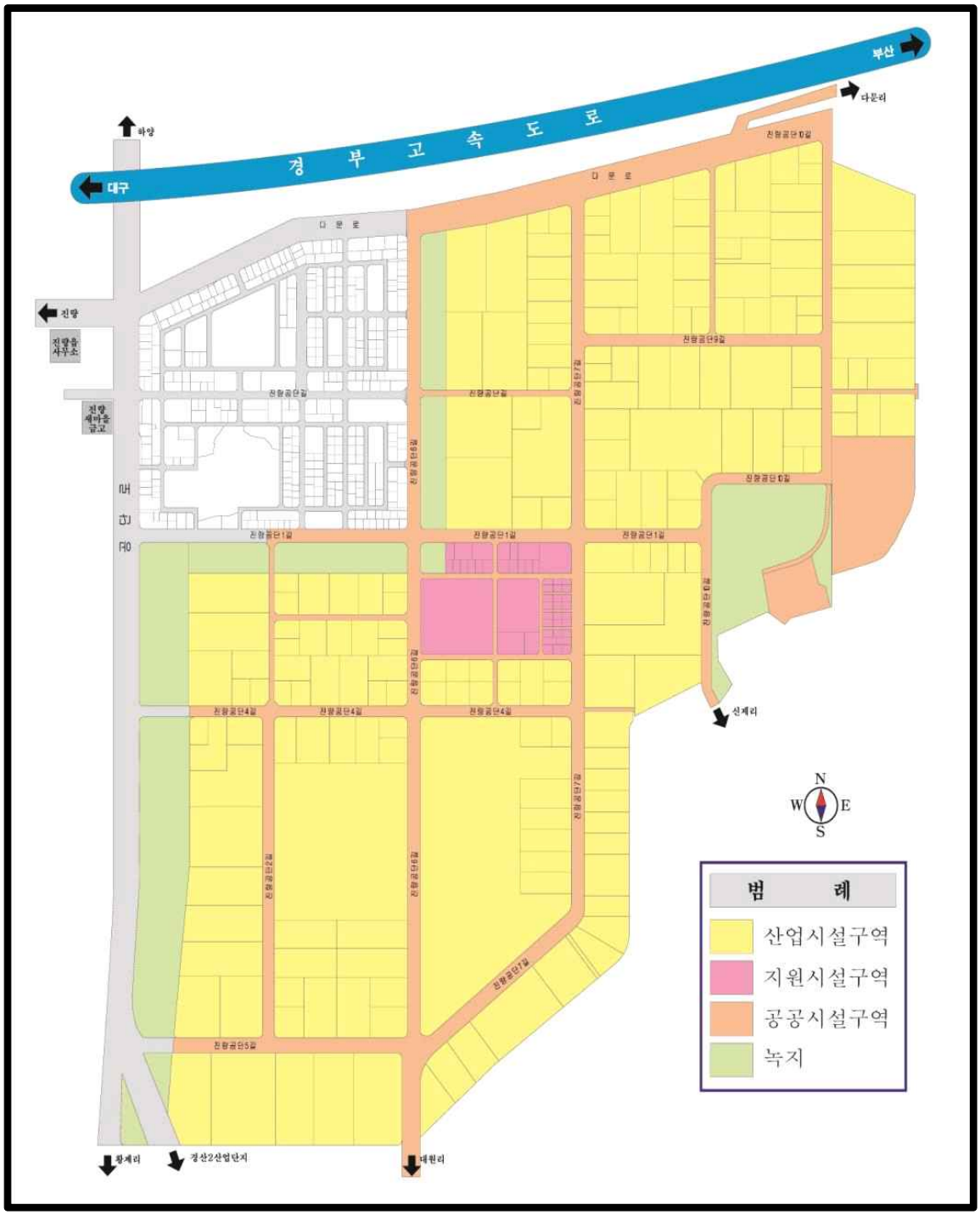
○ 입주업체 사후관리사업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안전관리 | 1994년 ~ 계속 | · 안전관리 예방점검 실시<br>· 주요시설 경계 및 안전관리시설 확보 |
|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 1994년 ~ 계속 | · 부도업체 정상화 추진<br>· 임의양도 및 불법임대 시정<br>· 공장용지 유휴화 방지 및 타 용도 사용 규제 |
| 단지방호력 향상 | 1994년 ~ 계속 | · 단지방호 및 산업동원 계획수립<br>· 방위협의회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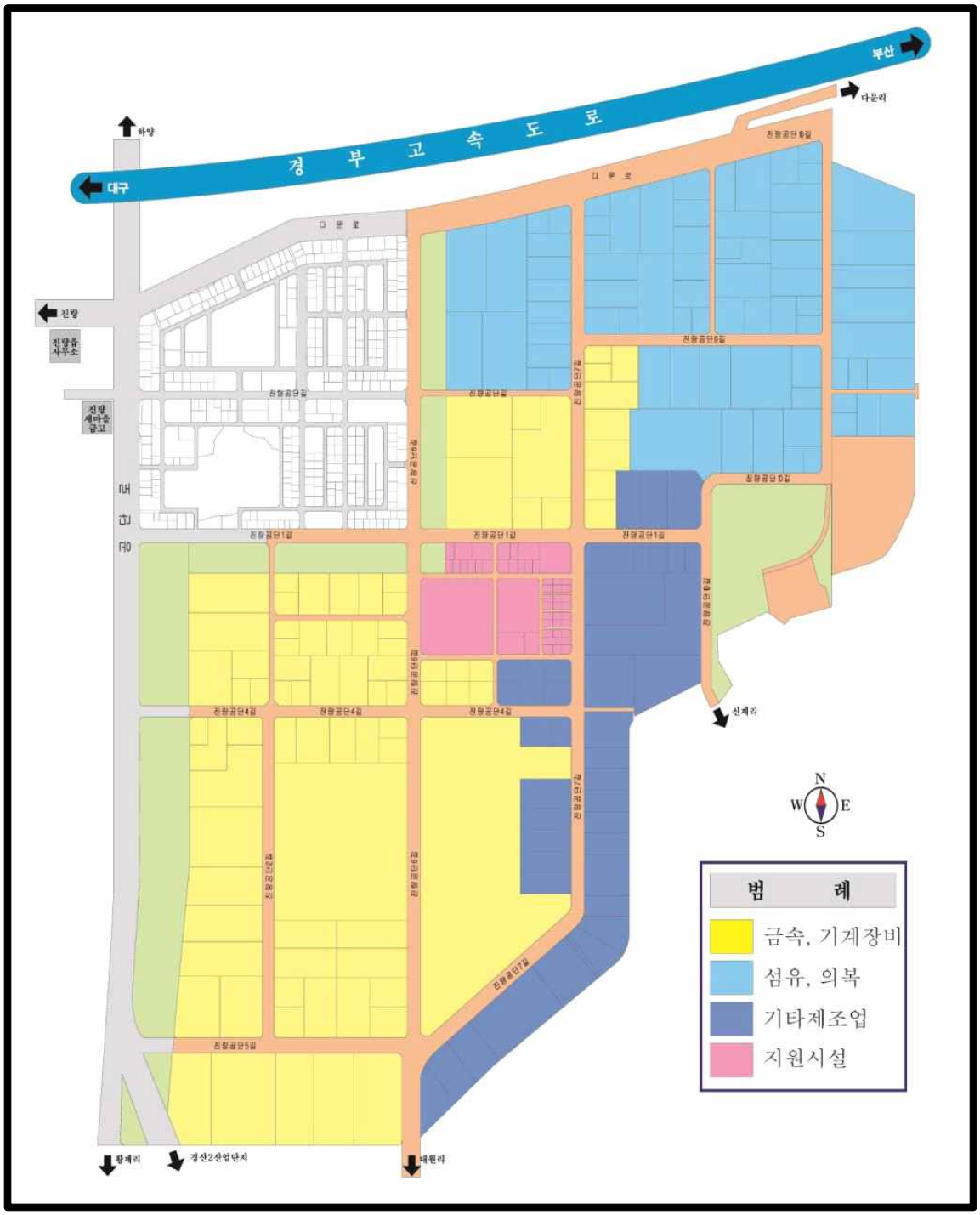
자. 산업단지 관리근거(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경산1산업단지 환경(교통)영향평가, 분양공고내용,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등에 따라 관리 함.

별첨 1 : 용도별 구획평면도(변경없음)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2-14호

# 경산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1. 산업단지 일반현황(변경)

가. 산업단지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경산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교촌리, 북사리 일원

○ 면 적 : 489,299.7㎡

※ 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 총면적 중 제척지 인접 산업시설구역 8필지 3,763.4㎡는 경산시에서 관리

○ 관리기관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유치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계획적인 산업단지개발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경산시)

○ 시행기간 : 1994. 8. 5 ~ 1999. 9.30

라. 추진경위(변경)

○ 1990. 2.24 도시계획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결정(경북도 고시 제36호)

○ 1990. 9. 1 진량 및 자인공단 오·폐수 증설공사 업무협약(환경부)

○ 1993. 6.30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1994. 8. 5 지방공업단지 지정(경상북도 고시 제1994-177호)

○ 1994.12.15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94.12.28 실시계획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4-296호)

○ 1995. 4.13 공사착공

○ 1996. 4.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1994-296호)

○ 1999. 1.18 산업단지 관리업무 인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536호(1999. 1.11)〕

○ 1999.10.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경상북도 공고 제1999-307호)

○ 2000. 1.20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0-14호)

○ 2008. 4. 7 개발계획변경; 경산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175호)

○ 2008. 4. 7 실시계획변경; 경산시 (경상북도 고시 제2008-176호)

(산업단지명칭변경 : 자인지방산업단지 → 경산2일반산업단지)

○ 2008. 9.25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8-447호)

○ 2010. 3. 8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10-78호)

○ **2015. 1. 5 관리기본계획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15-4호)**

마. 분양현황(변경없음)

(단위 : ㎡)

|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 | |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 | | 분양 | 미분양 | | | 계 | | |
| | | | 조성 | 미조성 | 소계 | | | |
| | 489,299.7 | 336,362.3 | - | 0 | - | 336,362.3 | 1994. 8. 5 ~ 1999. 9.30 | 경산시 중진공 |

바. 입주현황(변경없음)

(단위 : 개, ㎡)

| 구분 | 입주업체수 | | | 면 적 | | | 비 고 |
|---|---|---|---|---|---|---|---|
| | 제조업 | 지원기관 (근린시설) | 계 | 제조업 | 지원기관 (근린시설) | 계 | |
| | 104 | 7 | 111 | 336,362.3 | 11,526.9 | 347,889.2 | 업체 합병 |

사. 입지여건(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시설명</th><th>현 재 현 황</th><th>확충계획</th></tr>
<tr><td rowspan="3">교통</td><td>항공</td><td>• 대구공항 : 26.6 ㎞<br>· 대구 ~ 서울 : 12회 왕복(소요시간 : 50분)</td><td rowspan="3"></td></tr>
<tr><td>철도</td><td>• 경산역(경부선) : 11.2 ㎞<br>• 하양역(대구선) : 6.0 ㎞</td></tr>
<tr><td>도로</td><td>• 경부고속도로 4.0㎞(공단 ~ 경산 I.C)<br>• 국도 4호 10.3㎞(공단 ~ 하양)<br>• 지방도 985호 4.0㎞(공단 ~ 진량)</td></tr>
<tr><td colspan="2">용 수</td><td>• 시설현황 (단위 : ㎥/일)<br><table><tr><td>구 분</td><td>시 설 용 량</td><td>비 고</td></tr><tr><td>공업용수</td><td>3,100</td><td>영남대정수장</td></tr><tr><td>생활용수</td><td>837</td><td>자인정수장</td></tr><tr><td>계</td><td>3,937</td><td></td></tr></table></td><td></td></tr>
<tr><td colspan="2">전 력</td><td>• 시설현황 (단위 : KVA)<br><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시 설 내 용</td></tr><tr><td>변전소명</td><td>시설용량</td></tr><tr><td>일반전력</td><td>한전<br>경산전력소</td><td>40,152KVA 인입공급</td></tr></table></td><td></td></tr>
<tr><td colspan="2">통 신</td><td>• 시설용량<br><table><tr><td>국 명</td><td>시설명</td><td>시설수</td><td></td></tr><tr><td>하양전화국</td><td>RASM</td><td>914회선 설치</td><td></td></tr></table></td><td></td></tr>
<tr><td colspan="2">단지내<br>도로</td><td>• 노선 20개소<br>· 연장 : 6,660m · 면적 : 12,421.9 ㎡</td><td></td></tr>
<tr><td colspan="2">하수도시설<br>(폐수시설)</td><td>• 경산하수종말처리장<br><table><tr><td>종합처리장</td><td>차집관거</td><td>처리용량</td><td>기 타</td><td></td></tr><tr><td>1</td><td>15,819 m<br>설치</td><td>3,216㎥<br>(2001년기준)</td><td>폭기조<br>침전기</td><td></td></tr></table></td><td></td></tr>
</table>

| 시설명 | 현 재 현 황 | | | 확충계획 |
|---|---|---|---|---|
| 폐기물 처리시설 | • 처리계획 | | | |
| | 일반폐기물 | 경산1일반산업단지 매립장에 소각매립 | | |
| | 지정폐기물 | 개별업체에서 전량 위탁처리 | | |
| | ※ 경산1일반산업단지 매립장<br>– 전체 매립용량 229,500 ㎥<br>– 면적 40,125 ㎡ | | | |
| 녹지 | • 완충녹지<br>· 면적 25,568.2 ㎡ | | | |

## 2.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가.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첨단산업의 적극 유치와 조업활동의 극대화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

○ 업종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

○ 건전한 노·사 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변경)

○ 관리대상 산업단지 면적(변경없음)

(단위 : ㎡)

| 산업단지 총면적 | 세 부 면 적 | | | | 비 고 |
|---|---|---|---|---|---|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지 | |
| 489,299.7 | 336,362.3 | 11,526.9 | 115,842.3 | 25,568.2 | |
| ※ 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 총면적(489,299.7㎡) 중 제척지 인접 산업시설구역 8필지 3,763.4㎡는 경산시에서 관리 | | | | | |

○ 입주대상업종(변경)

| | |
|---|---|
| 기정 | • 섬유·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인쇄업<br>–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단, 별도 지정구역(2,313.5㎡)에만 가능〕<br>• 금속·기계장비<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기계장비부품 생산관련)<br>※ 세세분류 22191(25191), 22240(25240) 한정 입주<br>– 24. 1차금속 제조업<br>〔자동차부품·기계장비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공정 중 1/3 이내) 한정 입주〕<br>※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기타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연소제품제외)<b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r>– 35. 기타발전업(35119)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용도<br><br>※ 주: 1. 염색, 호부, 피혁제조, 도금, 도장, 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 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의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 |

| | |
|---|---|
| 변<br>경 | • 섬유·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인쇄업<br>–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단, 별도 지정구역(2,313.5㎡)에만 가능〕<br>• 금속·기계장비<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기계장비부품 생산관련)<br>※ 세세분류 22191(25191), 22240(25240) 한정 입주<br>– 24. 1차금속 제조업<br>〔자동차부품·기계장비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공정 중 1/3 이내) 한정 입주〕<br>※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기타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연소제품제외)<br>•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br>– 35. 기타발전업(35119)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용도<br>**• 부동산업**<br>**– 68.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br>※ 주: 1. 염색, 호부, 피혁제조, 도금, 도장, 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 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의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 |

○ 입주기업체의 자격(변경)

| | |
|---|---|
| 기정 | • 산업시설구역<br>–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지원시설구역<br>–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공공시설구역<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안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br>•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br><br>※ 주: 1.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임대,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br>2.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는 관련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
| **변경** | • 산업시설구역<br>–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 | |
|---|---|
| | • 지원시설구역<br>–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br>**–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br>**–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br>• 공공시설구역<br>**–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br>•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br>•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br><br>※ 주: 1.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임대,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br>2.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는 관련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

○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 인력수급의 지원,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 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함
-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만,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3년이 경과한 업체는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필지 최소면적을 3,300㎡ 이상으로 하고 분할 경계에 고정식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검토 가능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 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단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범위에 따라 관리

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면적 - 별첨1 참조(변경없음)

(단위 : ㎡, %)

| 총면적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지 | 비 고 |
|---|---|---|---|---|---|
| 489,299.7<br>(100) | 336,362.3<br>(68.7) | 11,526.9<br>(2.4) | 115,842.3<br>(23.7) | 25,568.2<br>(5.2) | |

라.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없음)

(단위 : ㎡, %)

| 계 | 공장시설 용도(㎡) | 지식산업 시설용도 (㎡) | 정보통신 산업시설 용도(㎡) | 자원비축 시설용도 (㎡) |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 | 기타(㎡) |
|---|---|---|---|---|---|---|
| 336,362.3 (100) | 336,362.3 (100) | 0 | 0 | 0 | 0 | 0 |

마.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서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산업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변경**)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

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산업단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바. 업종별 공장의 배치(변경없음)

○ 배치기준

- 미래지향적인 장래유망 업종으로 공장을 배치하여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별(금속·기계장비, 섬유·의복, 기타제조업), 기업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로 조화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 - 별첨2 참조

| 구분 | 업종별 배치계획 | | | 비 고 |
|---|---|---|---|---|
| | 업종(중분류) | 업체수(개) | 면적(㎡) | |
| 단지 | 섬유 · 의복 (13, 14) | 15 | 55,189.7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단, 별도 지정 구역(2,313.5㎡)에 만 가능〕<br>24.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공정 중 1/3이내)한정 입주〕<br>※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 |
| | 인쇄업 (18) | 1 | 2,313.5 | |
| | 금속 · 기계장비 (22, 24, 25, 26, 27, 28, 30) | 33 | 114,331.4 | |
| | 기타제조 (29, 31, 32, 33) | 55 | 164,527.7 | |
| 계 | | 104 | 336,362.3 | |

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없음)

○ 운영기본방향

• 입주업체 생산지원을 위한 공공업무와 근로자 편익시설 위주로 설치

○ 지원시설 설치계획

• 기존시설

| 사 업 명 | 시 설 명 | 기 간 | 사 업 내 용 |
|---|---|---|---|
| 통신 | 전화국자인분국 | 1999년 ~ 계속 | 업체통신지원 |
| 주차 | 주차장 | 1999년 ~ 계속 | 산업단지차량주차 |
| 운송 | 화물운송시설 | 1999년 ~ 계속 | 업체화물수송 |

• 향후시설계획

| 사 업 명 | 시 설 명 | 기 간 | 사 업 내 용 |
|---|---|---|---|
| 편익시설 | 은행<br>세차장<br>근린생활시설 등 | 2000년 ~ 계속<br>2000년 ~ 계속<br>2000년 ~ 계속 | 입주업체금융활동<br>기타생활편익제공 |

아. 기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변경없음)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행정지원 | 2000년 ~ 계속 | ·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br>· 공장설립완료신고 처리<br>· 공장등록 및 증명서발급<br>· 산업용지 및 공장처분에 관한 업무<br>· 공장임대에 관한 업무<br>· 경매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관리 등 |
| 단지환경정비 | 2000년 ~ 계속 | · 공단 청소차운행 공장발생 폐기물 수거작업<br>- 음식폐기물<br>- 사업장일반폐기물<br>· 소각로 운영<br>· 가로청소 및 폐기물수집<br>· 가로수관리 및 녹지조경관리 사업 |
| 생산성향상 | 2000년 ~ 계속 | · 년도별, 품목별 수출계획수립 안내<br>·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br>· 활로 개척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br>· 품목별, 지역별 해외시장정보 제공<br>· 경기 동향파악 업체안내 |
| 경영개선<br>및<br>기술개발지원 | 2000년 ~ 계속 | · 구조개선 자금 대출 및 지원안내<br>· 공장 자동화 설비자금 지원안내<br>·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br>· 제품생산관리 및 노무관리 기법지원<br>· 산·학·연 활동체계 구축 |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내 용 |
|---|---|---|
| 고용안정<br>및<br>노사관계지원 | 2000년 ~ 계속 | · 주부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 유치추진<br>· 무료취업 상담실 운영<br>· 향토 유휴인력(주부. 실직자) 고용 추진<br>· 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br>· 노사 협력관계 우수업체 방문활동 지원<br>·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지원<br>· 노사관계 교육 및 간담회 개최<br>· 유관기관단체와의 노사문제 협조체제 구축 |
| 환경재해<br>및<br>단지방호지원 | 2000년 ~ 계속 | ·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실시<br>· 단지환경관리협의회 운영<br>· 재해예방 점검리스트 작성 분기점검 지원<br>· 주요시설 및 위험시설 월간점검 지원<br>· 업체간 비상연락체계 구축<br>·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br>(군, 경찰, 환경청, 경산시) |

자. 산업단지 관리근거(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경산2산업단지 환경(교통)영향평가, 분양공고내용,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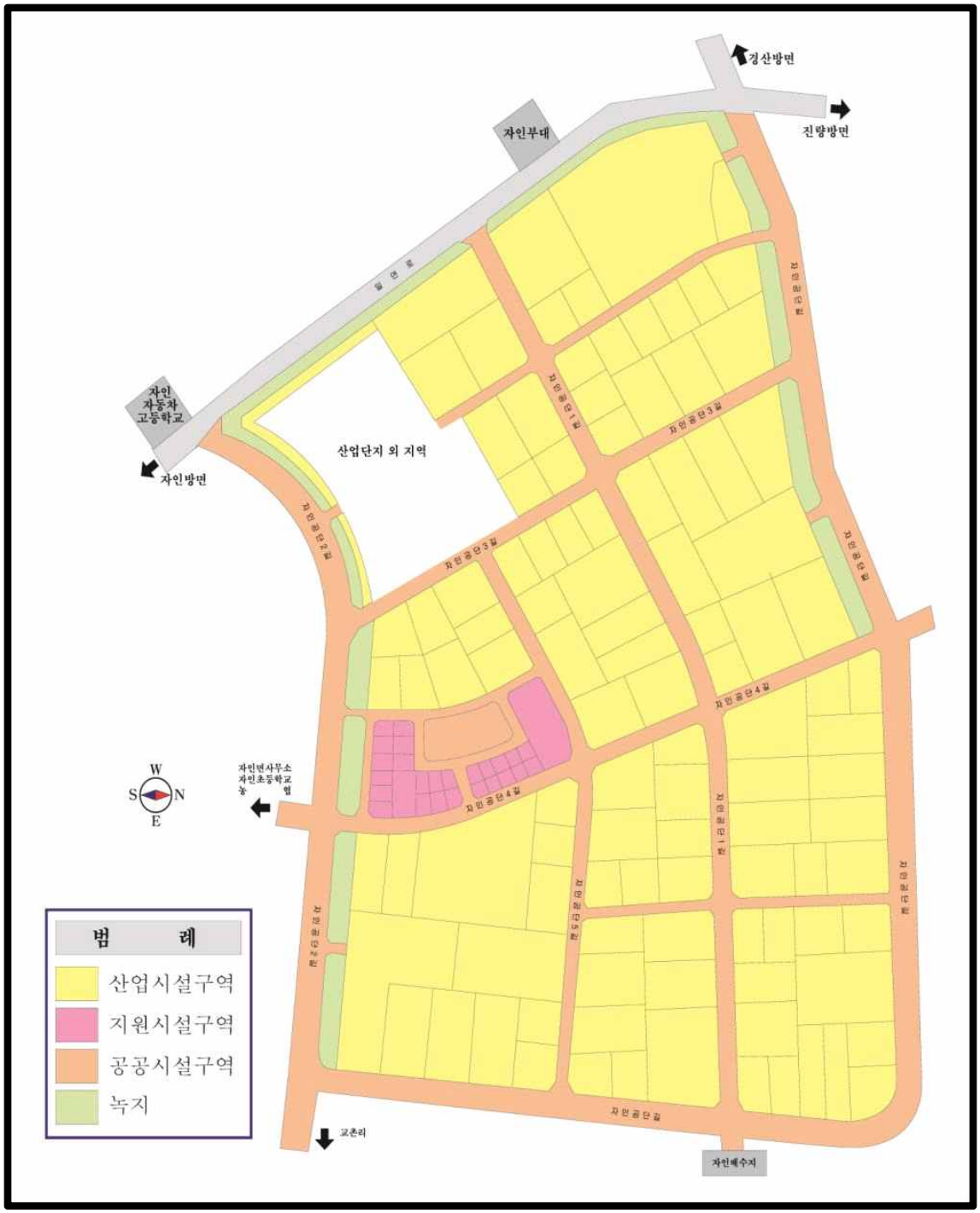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변경없음)**

**4. 관련도서 열람방법(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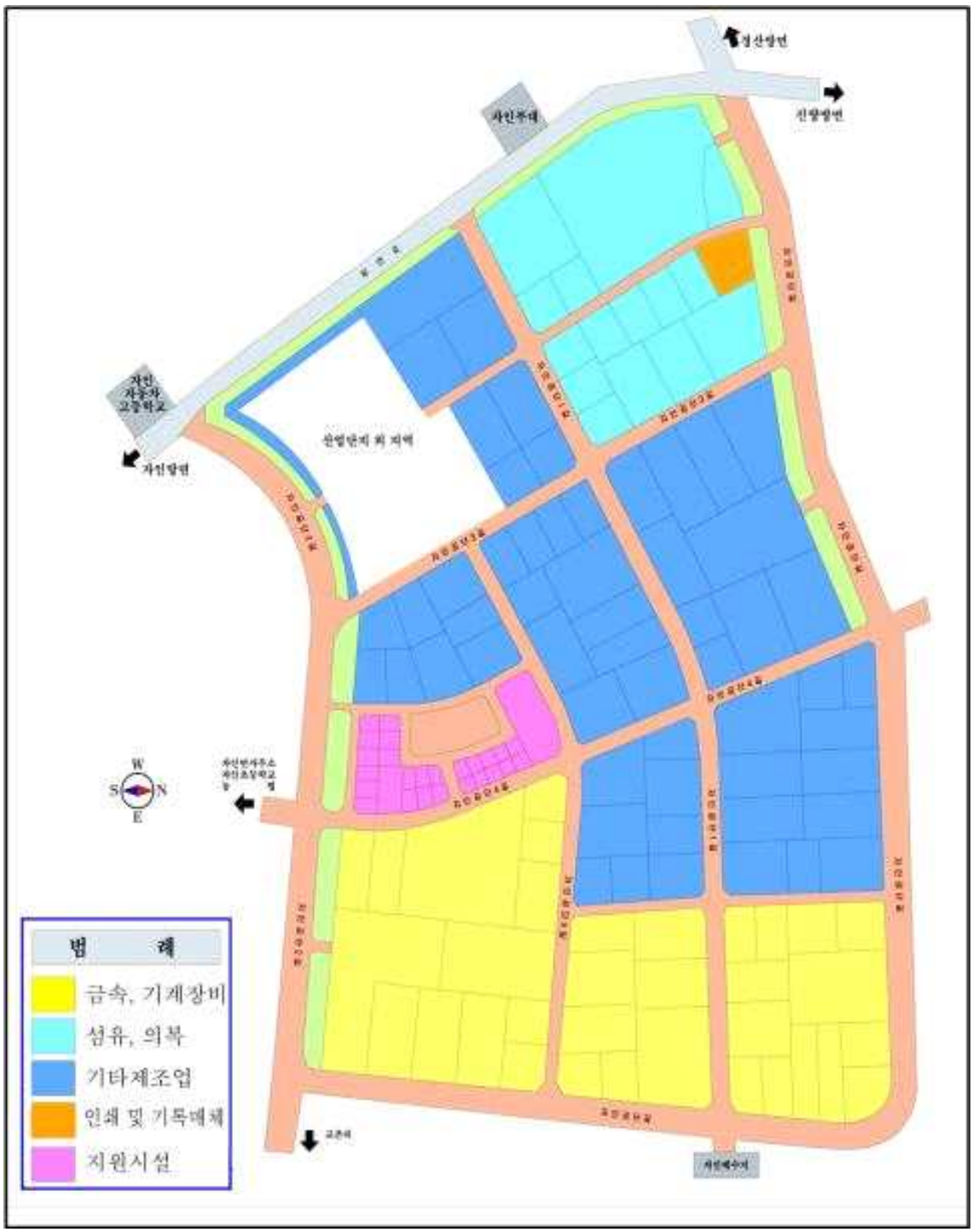
○ 관계도서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 1 : 용도별 구획평면도(변경없음)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2-15호

#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Ⅰ. 산업단지 일반현황(변경)

### 1. 산업단지의 개요(변경없음)

○ 명 칭 : 경산3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대원리 일원

○ 관리기관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 면 적 :

(단위 : ㎡)

|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 합 계 | 1,497,259.4 | 100 | |
| 산업시설 | 1,010,516.2 | 67.5 | |

|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 지원시설 | 85,859.1 | 5.7 | ※ 이주자택지(41,189.6㎡)는 관리면적에서 제외 |
| 공공시설 | 235,487.1 | 15.7 | - 도로, 주차장, 유수지,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
| 녹지시설 | 165,397 | 11.1 | - 녹지, 공원 |

## 2. 조성목적(변경없음)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산업입지 전략에 부응

○ 경산시권 및 대구시권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

○ 경산시권 내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제공

○ 학원도시인 경산시의 특성을 반영 산·학 연계체계구축,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생산성 증대 및 소득수준 향상 도모

## 3.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05.09 ~ 2009.11.30(준공)

## 4. 추진경위(변경)

○ 2002.09. 입주수요조사(한국토지공사)

○ 2004.08. 사업시행협약체결(경산시와 한국토지공사)

○ 2004.09. 산업단지 지정 신청

○ 2004.10. 주민 등의 의견 청취(공고 및 공람)

○ 2004.10. ~ 2005.03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완료

○ 2005.04.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05.09 진량2일반산업단지지정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5-114호)

○ 2005.12.21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 2005.12.26 교통영향평가협의 완료

○ 2006.02.06 재해영향평가협의 완료

○ 2006.04.10 실시계획승인신청

○ 2006.09.04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06-326호)

○ 2006.09.04 지정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327호)

○ 2007.04.23 관리기본계획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207호)

○ 2008.04.28 지정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05호)

○ 2008.04.28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06호)

○ 2008.05.26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1호)

○ 2008.11.27 개발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50호)

○ 2008.11.27 실시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51호)

○ 2008.12.29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675호)

○ 2009.11.20 준공

○ 2009.12.17 개발사업준공인가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9-1365호)

○ 2010.03.08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0-77호)

○ 2011.06.16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1-236호)

○ 2011.11.03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1-440호)

○ 2014.08.11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4-278호)

○ 2014.09.11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4-298호)

○ 2015.01.05 경산3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5-1호)

○ 2015.11.05 경산3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5-363호)

○ 2015.12.17 경산3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5-448호)

○ 2016.04.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16-570호)

○ 2017.02.27 경산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경산시 고시 제2017-26호)

○ 2017.05.22 경산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정정고시(경산시 고시 제2017-72호)

○ 2017.10.12 경산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경산시 고시 제2017-141호)

○ 2019.02.18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9-50호)

### 5. 분양현황(변경없음)

|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 | | 분양 | 미분양 | 계 | | |
| 계 | 1,456,069.8 | 1,077,490.9 | 4,683.7 | 1,082,174.6 | 2014.08 ~ 2015.07. 31. (당초 준공 2009.11. 30) | 한국토지공사 |
| 산업시설구역 | 1,010,516.2 | 1,010,516.2 | - | 1,010,516.2 | | |
| 지원시설구역 | 44,669.5 | 44,669.5 | - | 44,669.5 | | |
| 공공시설구역 | 235,487.1 | 22,305.2 | 4,683.7 | 26,988.9 | | |
| 녹지구역 | 165,397 | - | - | - | | |

※ 토지이용계획상 총면적(1,497,259.4㎡) 중 지원시설구역 내 이주자택지 41,189.6㎡는 관리공단 관리면적에서 제외
※ 산업시설구역 중 32,781.8㎡는 임대산업용지 임

### 6. 입주계획(변경없음)

| 구 분 | 입주업체수(개) | | | | 면 적 (㎡) | | | |
|---|---|---|---|---|---|---|---|---|
| | 제조업체 | 지원시설 | 기타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기타 | 계 |
| 계 | 69 | 23 | 3 | 95 | 1,010,516.2 | 44,669.5 | 26,988.9 | 1,082,174.6 |
| 2019년 1월 현재 | 69 | 23 | 2 | 94 | 1,010,516.2 | 44,669.5 | 22,305.2 | 1,077,490.9 |
| 향후계획 | - | - | 1 | 1 | - | - | 4,683.7 | 4,683.7 |

## 7. 입지여건(변경없음)

| 시설명 | 현황 및 사업 개요 | 시행기관 |
|---|---|---|
| 교통 | • 경부고속도로 연접 경산 IC 이용<br>– 지방도 919호선 연접<br>– 국지도 69호선 연접<br>• 철도<br>– 경부선 경산역 이용<br>• 공항<br>– 대구공항 이용<br>– 대구 ~ 서울 간 50분 | |
| 단지 내 도로 | • 노선 : 43개소<br>– 대로6, 중로14, 소로23<br>• 연장 : 9,860.3m<br>– 대로 3,403.8m<br>– 중로 4,645.3m<br>– 소로 1,811.2m<br>• 면적 : 196,405.1㎡<br>– 대로 92,033.8㎡<br>– 중로 86,806.7㎡<br>– 소로 17,564.6㎡ | 한국토지공사 |
| 공 원 | • 공원 4개소 : 48,093.6㎡<br>– 근린공원 2개소 44,711.7㎡<br>– 어린이공원 2개소 3,381.9㎡ | 한국토지공사 |
| 녹 지 | • 녹지 12개소 : 117,303.4㎡<br>– 완충녹지 11개소 89,582.6㎡<br>– 경관녹지 1개소 27,720.8㎡ | 한국토지공사 |
| 용 수 | • 신설취수장(Q=12,000㎥/일)에서 관경 D=500㎜ 용수관로 인입<br>•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 신설 정·배수지에서 공급<br>• 용수 수요량 : 5,616.7㎥/일<br>– 공업용수 : 4,428.9㎥/일<br>– 생활용수 : 1,187.8㎥/일 | 경산시 |

| 시설명 | 현황 및 사업 개요 | 시행기관 |
|---|---|---|
| 오폐수 | • 경산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br>– Q = 115,000㎥/일<br>– 차집관로 3,914m<br>– D = 500mm<br>• 발생량 : 1,923㎥/일<br>– 폐 수 : 702㎥/일<br>– 생활오수 : 1,046㎥/일<br>– 지 하 수 : 175㎥/일 | 경산시 |
| 유수지 | • 저류시설 3개소<br>– 12,087.1㎡ 설치 | 한국토지공사 |
| 폐기물 처리시설 | • 폐기물발생량추정:124.101(ton/일)<br>– 생활폐기물 : 2.650<br>–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5.075<br>–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68.620<br>– 지정폐기물 : 47.756<br>• 경산1일반산업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진량2일반산업단지와 공동운영 협약(LH↔경산시, 2014. 3) 체결로 경산1일반산업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진량2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 매립 대상폐기물을 처리 | 경산시, 한국토지공사 |
| 공공주차장 | • 노외 주차장 2개소<br>– 8,987.4㎡ | 한국토지공사 |
| 전 력 | • 변전소부지 : 18,001.5㎡<br>• 총전력 소요량 : 279,678 MWh/년<br>– 생산시설 263,374 MWh/년<br>– 기타시설 16,304 MWh/년 | 한국전력 |
| 에너지공급 | • 연료사용량 41,993천Nm³/년<br>– 생산시설 40,523천Nm³/년<br>– 난방 1,281천Nm³/년<br>– 취사 189천Nm³/년 | 대구도시가스 |

| 시설명 | 현황 및 사업 개요 | 시행기관 |
|---|---|---|
| 통 신 | • 수요량 4,867회선<br>- 생산시설 2,570회선<br>- 지원 등 2,297회선 | 한국통신 |
| 가스<br>공급시설 | • 정압시설<br>- 6㎡(대원리 418번지) | 대구<br>도시가스 |
| 산업단지<br>외의<br>교통시설<br>(준용사업) | • 도로 1개소<br>- 규모 : 대로<br>- 연장 : 639m<br>- 면적 : 6,665㎡ | 경산시 |
| 산업단지<br>외의<br>수도시설<br>(준용사업) | • 정·배수지<br>- 위치 : 신제리 1189-2번지 일원<br>- 면적 : 19,630㎡ | 경산시 |

##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1. 기본방향(변경없음)

○ 국제화 ·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복합 산업단지 및 기술집약적 산업단지 조성

○ 입지적 특성 및 자연지형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단지조성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과 계획내용을 고려한 공간구성으로 상호 연계성 제고 및 경산산업단지 전체 동선과의 유기적 연결 도모

○ 유치업종간 계열화 및 연계화가 가능한 생산용지 조성으로 집적연계를 통

한 시너지(Synergy) 효과 창출

○ 생산적이고 쾌적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능간의 합리적 배치 및 충분한 녹지대 설치와 가로식재로 환경이미지 창출

## 2. 입주 및 사후 관리계획(변경)

가. 관리대상 산업단지 면적(변경없음)

| 총 면적(㎡) | 세부면적 (㎡) | | | | 비 고 |
|---|---|---|---|---|---|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 지 | |
| 1,456,069.8 | 1,010,516.2<br>(69.4%) | 44,669.5<br>(3.0%) | 235,487.1<br>(16.2%) | 165,397<br>(11.4%) | |
| ※ 토지이용계획상 총면적(1,497,259.4㎡)중 지원시설구역 내 이주자택지 41,189.6㎡는 관리공단 관리면적에서 제외<br>※ 산업시설구역 중 32,781.8㎡는 임대산업용지 임 | | | | | |

나. 입주대상업종, 입주우선순위 및 사후관리계획(변경)

○ 입주대상업종(변경)

| | |
|---|---|
| 기정 | • 섬유, 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금속, 기계, 자동차, 기타 제조업<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생산관련)<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생산관련)<br>※ 단, 별도 지정구역(8,987.3㎡)에만 가능<br>– 24.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공정 중 1/3 이내)한정 입주〕<br>※ 환경오염방지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br>• 메카트로닉스(섬유기계, 자동차부품)<br>- 28. 전기장비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업종배치계획구역 내에 한정)<br>•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주: 1. 염색·호부·피혁제조·도금·도장·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 (다만, 자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br>3. 기존 입주업체의 영위업종은 현재의 위치에서 한정하여 인정 |
| **변경** | • 섬유, 의복<br>-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br>-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br>• 금속, 기계, 자동차, 기타 제조업<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부품생산관련)<br>-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생산관련)<br>※ 단, 별도 지정구역(8,987.3㎡)에만 가능<br>- 24. 1차금속 제조업〔자동차부품 알루미늄다이캐스팅(공정 중 1/3 이내)한정 입주〕<br>※ 환경오염방지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br>-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br>-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br>-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 28. 전기장비 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 32. 가구 제조업<br>- 33. 기타 제품 제조업<br>• 메카트로닉스(섬유기계, 자동차부품)<br>- 28. 전기장비제조업<br>-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br>-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업종배치계획구역 내에 한정)<br>•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부동산업<br>- 68.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br>※ 주: 1. 염색·호부·피혁제조·도금·도장·주물 등의 공정은 입주를 제한 (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부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제조공정의 1/3 이내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예외로 한다)<br>2. 물류, 보관, 운송, 판매, 서비스, 폐기물처리 등 시설이나 업종은 입주를 제한<br>3. 기존 입주업체의 영위업종은 현재의 위치에서 한정하여 인정 |

○ 입주업체자격(변경)

| | |
|---|---|
| 기정 | • 산업시설구역:<br>·「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지원시설구역<br>·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공공시설구역<br>· 변전소, 주차장, 가스공급시설<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 | |
|---|---|
| |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수 있을 것<br>•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br>•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br>•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는 관련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
| 변경 | • 산업시설구역:<br>·「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br>·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태양에너지 발전업<br>·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br>• 지원시설구역<br>·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br>·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br>·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br>• 공공시설구역<br>· 변전소, 주차장, 가스공급시설<br>·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br>•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수 있을 것<br>•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 |
|---|---|
| |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 계획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br>• 환경, 공해방지, 건축, 제조, 안전, 기타 등 사업영위와 관련되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는 관련 행정기관(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야 함. |

○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경산시에 기업투자 의향서 제출한 업체는 분양심사시 우선 검토

○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 인력수급 지원,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만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3년이 경과한 업체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3,300㎡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

건 충족시 검토 가능

- 산업단지개발시행자(한국토지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는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 취득 불가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 다만 임대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발 시행자(한국토지공사)에 한하여 임대사업을 인정, 그 외의 경우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다.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계획(변경)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 별표1, 별표2 참조(변경없음)

| 총 면적(㎡) | 세부면적(㎡) | | | | 비 고 |
|---|---|---|---|---|---|
|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공공시설 | 녹 지 | |
| 1,456,069.8<br>(100%) | 1,010,516.2<br>(69.4%) | 44,669.5<br>(3.0%) | 235,487.1<br>(16.2%) | 165,397<br>( 11.4%) | |

※ 토지이용계획상 총면적(1,497,259.4㎡) 중 지원시설구역 내 이주자택지 41,189.6㎡는 관리공단 관리면적에서 제외

※ 산업시설구역 중 32,781.8㎡는 임대산업용지 임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변경없음)

| 총 면적(㎡) | 공장시설 용도 | 지식산업 시설용도 |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 자원비축 시설용도 | 폐기물처리 시설용도 | 기타 |
|---|---|---|---|---|---|---|
| 1,010,516.2 (100%) | 1,010,516.2 (100%) | 0 | 0 | 0 | 0 | 0 |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입주가능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 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등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
다. 상점(단, 게임제공업은 제외)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근생시설의 부대시설로 한정. 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주차장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는 지원시설구역 입주가능범위 내의 시설만 가능
- 변전소,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가스공급시설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변경)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의 발전업을 위한 용도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입주가능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소유주 주거용도에 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라. 기숙사(입주업체에서 직접 운영에 한정)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장, 제조시설, 변전소 등 제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납골당,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고시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등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마. 동·식물원
7. 판매시설
   다. 상점(단, 게임제공업은 제외)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한정)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근로복지시설 한정)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근생시설의 부대시설로 한정. 제조소, 화약류 제외)
20.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

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주차장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는 지원시설구역 입주가능범위 내의 시설만 가능
  - 변전소,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위한 용도(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가스공급시설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 별표3 참조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 배치계획 | | 비고 |
|---|---|---|---|
| | 업체수(개) | 면적(㎡) | |
| 계 | 69 | 1,010,516.2 | |
| 섬유, 의복 (13, 14) | 1 | 4,609.3 | |
| 금속, 기계, 자동차, 기타제조업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51 | 658,626.6 | - 임대산업용지 32,781.8㎡ 포함<br>- 단, 23. 비금속광물(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생산 관련) 제품 제조업은 별도 지정구역 (8,987.3㎡) 에만 가능<br>- 24. 1차 금속제조업〔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공정중 1/3 이내) 한정 입주(※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 |
| 메카트로닉스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28, 29, 30) | 16 | 312,027.1 | 산업클러스터조성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 | 1 | 35,253.2 | |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 기본방향

- 입주업체의 생산 지원 및 공공업무, 편익시설의 공간 제공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불가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용 도 | 세부용도(시설명) | 면 적(㎡) | 필지수(개) |
|---|---|---|---|
| 입주계약시 지정한 용도 | 생산업무 지원시설 | 44,669.5 | 23 |

•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내용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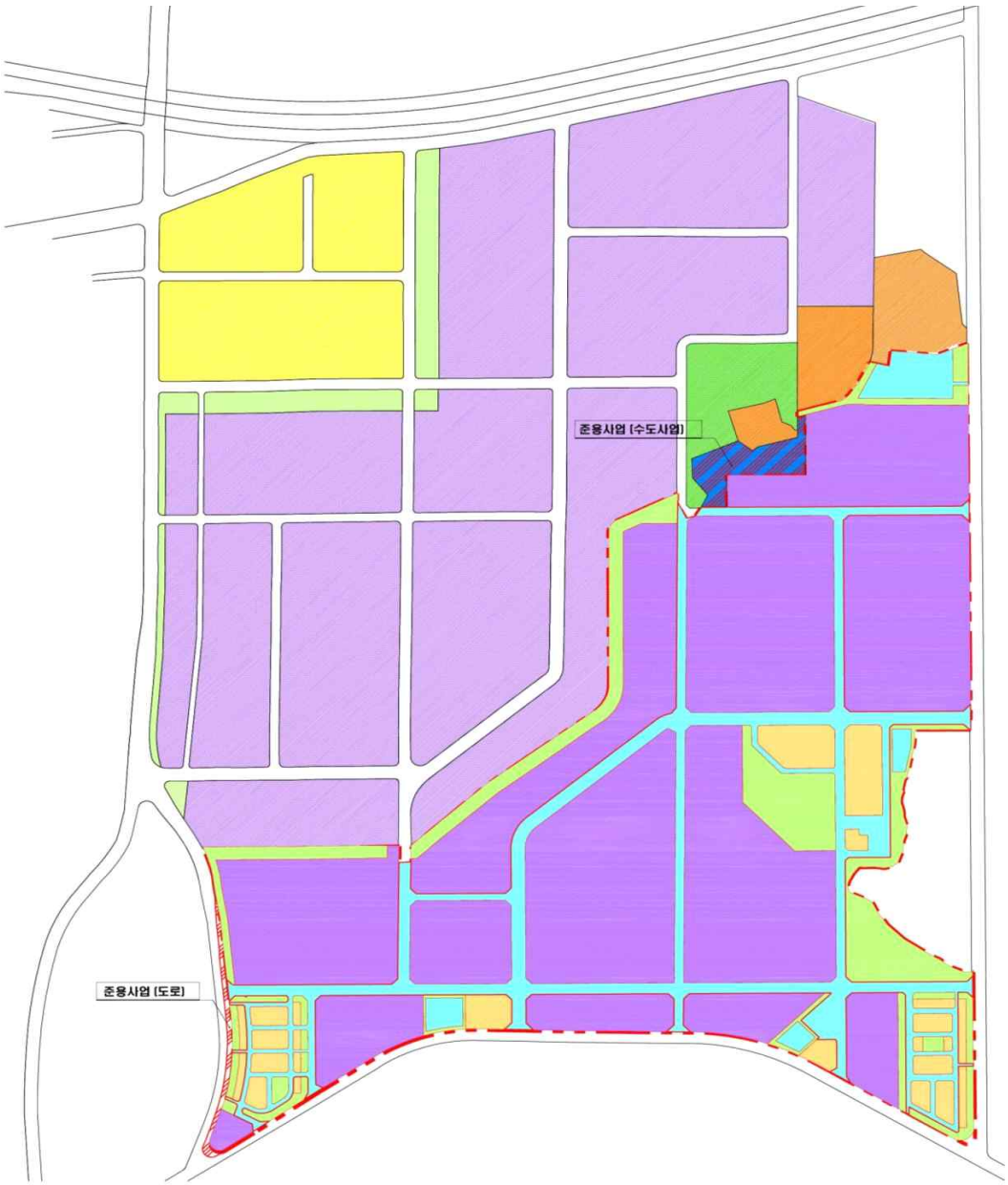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변경없음)**

**4. 관련도서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053-856-5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표1 : 용도별구획 평면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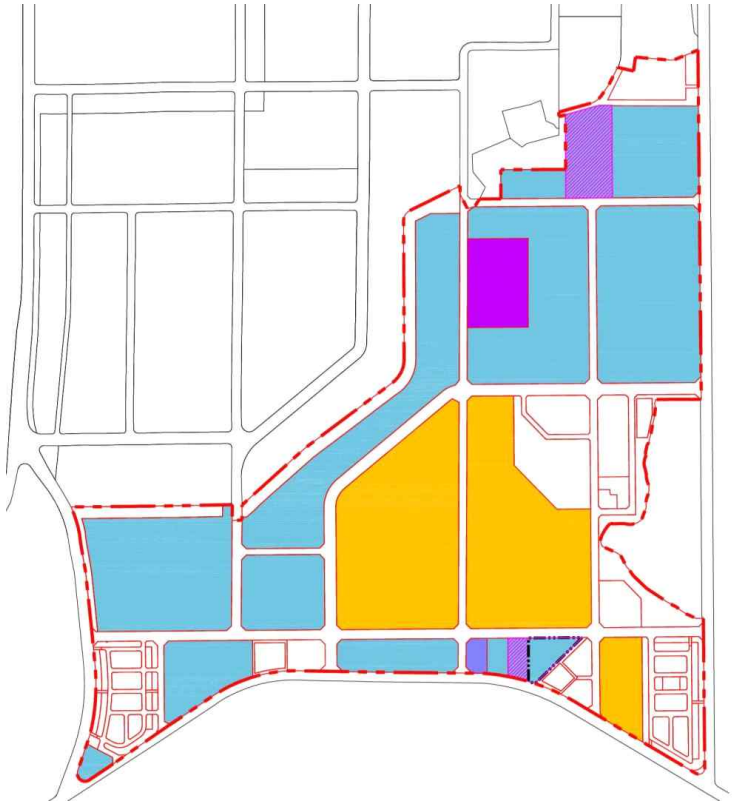



| 범례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 계 | 1,497,259.4 | 100.0 | |
| 산업시설구역 | 1,010,516.2 | 67.5 | |
| 지원시설구역 | 85,859.1 | 5.8 | ※ 이주자택지(41,189.6㎡)는 관리면적에서 제외 |
| 공공시설구역 | 235,487.1 | 15.7 | - 도로, 주차장, 유수지,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
| 녹지구역 | 165,397.0 | 11.0 | - 녹지, 공원 |

별표2 : 용도별구역 면적표(변경없음)

| 구 분 | | 토지이용계획 | | 관리기본계획 | | | 비고 |
|---|---|---|---|---|---|---|---|
| | | 면 적(㎡) | 구성비(%) | 관리구역 | | 제외구역 | |
| | |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
| 계 | | 1,497,259.4 | 100.0 | 1,456,069.8 | 100.0 | 41,189.6 | |
| 산업시설구역 | 소 계 | 1,010,516.2 | 67.5 | 1,010,516.2 | 69.4 | | |
| | 섬유, 의복 | 4,609.3 | 0.3 | 4,609.3 | 0.3 | | |
| | 고무·플라스틱제조업 | 35,253.2 | 2.4 | 35,253.2 | 2.4 | | |
| | 금속, 기계, 자동차, 기타제조업 | 658,626.6 | 44.0 | 658,626.6 | 45.3 | | |
| | 메카트로닉스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 312,027.1 | 20.8 | 312,027.1 | 21.4 | | |
| 지원시설구역 | 소 계 | 85,859.1 | 5.7 | 44,669.5 | 3.1 | 41,189.6 | |
| | 지원시설 | 44,669.5 | 3.0 | 44,669.5 | 3.1 | | |
| | 이주자택지 | 41,189.6 | 2.7 | - | - | 41,189.6 | |
| 공공시설구역 | 소 계 | 235,487.1 | 15.7 | 235,487.1 | 16.1 | | |
| | 도 로 | 196,405.1 | 13.1 | 196,405.1 | 13.5 | | |
| | 주차장 | 8,987.4 | 0.6 | 8,987.4 | 0.6 | | |
| | 유수지 | 12,087.1 | 0.8 | 12,087.1 | 0.8 | | |
| | 변전소 | 18,001.5 | 1.2 | 18,001.5 | 1.2 | | |
| | 가스공급시설 | 6.0 | 0 | 6.0 | 0 | | |
| 녹지구역 | 소 계 | 165,397 | 11.1 | 165,397 | 11.4 | | |
| | 녹지 | 117,303.4 | 8.0 | 117,303.4 | 8.1 | | |
| | 공원 | 48,093.6 | 3.1 | 48,093.6 | 3.3 | | |

별표3 : 업종별배치 계획도(변경없음)



| 범례 | 유치업종 | 비고 |
|---|---|---|
| 섬유·의복 |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br>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임대산업용지 (32,781.8㎡)<br>비금속 광물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 제품 생산관련) 제품 제조업 입주가능 지정 (8,987.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금속·기계·자동차 기타제조업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자동차부품생산관련)<br>23.비금속 광물(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 제품 생산관련)<br>24.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공정 중 1/3 이내) 한정 입주}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한함<br>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br>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br>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br>28.전기장비 제조업<br>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r>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br>32.가구 제조업<br>33.기타 제품 제조업 | |
| 메카트로닉스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 28.전기장비 제조업<br>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경상북도 고시 제2022-16호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 하천명 | 점용 목적 |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 위 치 | 점 용 자 | | 점용 기간 |
|---|---|---|---|---|---|---|
| | | | | 주 소 | 성 명 | |
| 지방 하천 (초곡천) | 보 설 치 | 자연형 여울보 12개소 (영구 10,947㎡)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17번지 일원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 문경시장 (안전재난과장) | 허가일로부터 영구 |

◈◈◈

경상북도 공고 제2022-15호

#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대상**

| 업체명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
| ㈜엠케이전기 (경북-01686) | 임동* |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275-8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 경과 (신고기간 : 2018.5.11.~2018.6.9.) |

| 업체명<br>(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
| 태광전설<br>주식회사<br>(경북-01794) | 김건* | 경북 경주시 북문로<br>55번길 31, 2층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br>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경과 후<br>90일 경과<br>(신고기간: 2020.5.12.~2020.6.10.) |

**3. 예정된 처분 내용**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남

**5.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제2의2호,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

나. 담 당 자 : 권순태(054-880-7646)

팩스 054-246-9055, 전자우편 gst3712@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1.21.(금)까지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아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의 견 | |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호

#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대상**

| 업체명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
| ㈜우암테크 (경북-01567) | 최병* | 경북 김천시 영남대로 1430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 기술능력 1인(산업기사 이상) 미달 (2018.3.31.~현재),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1.6.11.~현재) |

| 업체명<br>(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
| ㈜우림전기<br>(경기-03585) | 고무* | 경북 구미시 새마을로 38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기술능력 1인 미달(2018.5.15.~현재)<br>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19.6.5.~현재) |
| 주식회사<br>신울진전력<br>(서울-05204) | 문성*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울진북로 119, 2층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19.4.15.~현재) |
| 장산테크<br>주식회사<br>(경북-01284) | 황기* |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31번길 46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기술능력 1인 미달(2019.5.15.~현재)<br>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 상실<br>(2020.7.31.~현재) |
| ㈜에스제이일렉<br>(대구-00003) | 박창* | 경북 경주시 백률로 27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기술능력 3인 미달(2019.11.30.~현재, 2019.12.31.~ 현재) |
| ㈜대하기전<br>(경북-00299) | 권혁*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47, 2층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기술능력 1인 미달(2018.12.10.~현재) |
| ㈜금아산업<br>(부산-00047) | 장문*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23번길 25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함<br>기술능력 1인(산업기사 이상) 미달(2020.2.29.~현재)<br>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0.9.28.~현재) |
| ㈜아남전설<br>(경북-00224) | 유기* |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13 | 자본금 미달(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효력 상실)(2020.3.11.~현재) |

**3. 예정된 처분 내용**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함

**5. 처분근거**

-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제2호,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90,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

나. 담 당 자 : 권순태(054-880-7646)

팩스 054-246-9055, 전자우편 gst3712@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1.21.(금)까지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아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br>(전화번호: ) |
| | 의 견 | |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구미시 고시 제2022-1호

# 구미 도시관리계획(교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미시 선산읍 교리 130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교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기정 | - | 구미교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교리 1301 일원 | 361,157.7 | - | 361,157.7 | 경북고 제2007-446호 (2007.10.1) | 제1 · 2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 | 구성비 (%) | 비 고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계 | 361,157.7 | - | 361,157.7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93,623.9 | - | 193,623.9 | 53.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4,516.8 | - | 154,516.8 | 42.8 | |
| 일반상업지역 | 13,017.0 | - | 13,017.0 | 3.6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유별 | 합계 | | | 1류 | | | 2류 | | | 3류 | | |
|---|---|---|---|---|---|---|---|---|---|---|---|---|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57 | 8,129 | 71,095 | 8 | 1,293 | 15,575 | 35 | 4,950 | 44,806 | 14 | 1,886 | 10,714 |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10 | 2,412 | 29,250 | 2 | 412 | 6,520 | 6 | 1,619 | 18,158 | 2 | 381 | 4,572 |
| 소로 | 47 | 5,717 | 41,845 | 6 | 881 | 9,055 | 29 | 3,331 | 26,648 | 12 | 1,505 | 6,142 |

주) 면적은 연장×폭원으로 산정

가각, 중로2-66호선 개설잔여구간 및 국도33호선과의 연결도로 면적 제외

(나)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합계 | | | | | | 10,572 (8,129) | (57개소) | | | | | |
| 소계 | | | | | | 1,327 (412) | (2개소) | | | | | |
| 기정 | 중로 | 1 | 19 | 20 | 보조간선도로 | 1,192 (277) | 10호광장 | 대로3-39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4-25호 (2004.4.8) | 일부구간 반폭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20 | 20 | 보조간선도로 | 135 | 대로1-14 | 중로2-66 시점부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 8. 29) | |
| 소계 | | | | | | 3,147 (1,619) | (6개소) | | | | | |
| 기정 | 중로 | 2 | 66 | 15 | 보조간선도로 | 1,378 (216) | 중로1-20 종점부 | 대로1-14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37호 (1975. 3. 13) | 상업시설용지 남측일부구간 구역내 포함 B=1.2~1.5m L=210m |
| 기정 | 중로 | 2 | 68 | 15 | 집산도로 | 386 | (중로2-66) 교리 | (중로2-66) 교리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중로 | 2 | 72 | 15 | 집산도로 | 393 (182) | (대로3-2) 화조동 | (중로1-19) 화조동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전구간 반폭 |
| 기정 | 중로 | 2 | 92 | 15 | 보조간선도로 | 447 | 대로1-14 | 중로2-93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4-25호 (2004.4.8) | 전구간 반폭 |
| 기정 | 중로 | 2 | 93 | 15 | 보조간선도로 | 343 (188) | 중로1-14 | 중로1-19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4-25호 (2004.4.8) | 전구간 반폭 |
| 기정 | 중로 | 2 | 94 | 15 | 보조간선도로 | 200 | 대로1-14 | 중로2-65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 8. 29) | |

주) ( )는 구역 내 연장임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소계 | | | | | | 381 | (2개소) | | | | | |
| 기정 | 중로 | 3 | 76 | 12 | 보조간선도로 | 169 | 대로1-14 | 중로2-65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중로 | 3 | 77 | 12 | 집산도로 | 212 | 대로1-14 | 중로2-68 | 일반도로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소계 | | | | | | 881 | (6개소) | | | | | |
| 기정 | 소로 | 1 | 10 | 10 | 국지도로 | 224 | (중로2-66) 교리 | (소로1-9) 교리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소로 | 1 | 11 | 11 | 국지도로 | 88 | 소로1-10 | 완충녹지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1 | 16 | 10 | 국지도로 | 40 | 대로1-14 | 보행자전용도로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1 | 17 | 10 | 국지도로 | 247 | 대로1-14 | 중로2-72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1 | 18 | 10 | 국지도로 | 125 | (소로2-35) 교리 | (소로1-10) 교리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소로 | 1 | 19 | 11 | 국지도로 | 157 | 중로2-65 | 완충녹지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소계 | | | | | | 3,331 | (29개소) | | | | | |
| 기정 | 소로 | 2 | 35 | 8 | 국지도로 | 180 | 중로2-66 | 중로3-77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소로 | 2 | 39 | 8 | 국지도로 | 92 | 중로1-20 | 소로1-11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소로 | 2 | 44 | 8 | 국지도로 | 64 | 소로2-35 | 소로1-10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45 | 8 | 국지도로 | 100 | (소로2-35) 교리 | 소로1-10 | 일반도로 | -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소로 | 2 | 121 | 8 | 국지도로 | 92 | 중로1-20 | 소로1-11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2 | 8 | 국지도로 | 104 | 중로3-76 | 소로1-19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3 | 8 | 국지도로 | 100 | 중로3-76 | 소로1-19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4 | 8 | 국지도로 | 97 | 중로3-76 | 소로1-19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5 | 8 | 국지도로 | 81 | 소로2-140 | 중로2-94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6 | 8 | 국지도로 | 74 | 소로1-19 | 소로2-12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7 | 8 | 국지도로 | 67 | 소로2-122 | 소로2-123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8 | 8 | 국지도로 | 103 | 소로1-16 | 소로3-48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29 | 8 | 국지도로 | 102 | 소로1-16 | 소로3-4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0 | 8 | 국지도로 | 114 | 중로2-70 | 소로1-1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1 | 8 | 국지도로 | 128 | 소로1-17 | 소로2-133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33 | 8 | 국지도로 | 84 | 중로1-19 | 소로2-146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4 | 8 | 국지도로 | 97 | 소로1-17 | 소로2-133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6 | 8 | 국지도로 | 145 | 소로1-17 | 소로2-130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7 | 8 | 국지도로 | 208 | 소로1-17 | 소로1-1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2 | 138 | 8 | 국지도로 | 120 | 중로3-77 | 소로1-11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39 | 8 | 국지도로 | 120 | 중로3-77 | 소로1-11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0 | 8 | 국지도로 | 110 | 소로1-19 | 중로2-94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1 | 8 | 국지도로 | 82 | 소로1-19 | 소로2-125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2 | 8 | 국지도로 | 110 | 소로1-19 | 중로2-94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3 | 8 | 국지도로 | 111 | 소로1-19 | 중로2-94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4 | 8 | 국지도로 | 227 | 소로1-17 | 소로1-1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5 | 8 | 국지도로 | 59 | 소로2-130 | 소로2-136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46 | 8 | 국지도로 | 295 | 소로2-133 | 소로1-1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2 | 147 | 8 | 국지도로 | 65 | 소로1-17 | 소로2-137 | 일반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소계 | | | | | | 1,505 | (12개소) | | | | | |
| 기정 | 소로 | 3 | 44 | 4 | 특수도로 | 366 | 중로2-92 | 중로1-19 | 보행자전용도로 | - | 경북고 제2007-446호 (2007.10.1) | |
| 기정 | 소로 | 3 | 45 | 6 | 특수도로 | 28 | 대로1-14 | 소로1-11 종점부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3 | 46 | 6 | 특수도로 | 28 | 대로1-14 | 소로1-19 종점부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3 | 47 | 4 | 특수도로 | 359 | 중로2-92 | 중로1-19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3 | 48 | 4 | 특수도로 | 61 | 대로1-14 | 소로3-4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3 | 50 | 4 | 특수도로 | 16 | 중로1-19 | 어린이공원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소로 | 3 | 51 | 4 | 특수도로 | 201 | 중로1-19 | 소로1-1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52 | 4 | 특수도로 | 22 | 소로1-16 종점부 | 소로3-4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3 | 53 | 4 | 특수도로 | 182 | 대로1-14 | 소로1-1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3 | 54 | 4 | 특수도로 | 116 | 중로2-70 | 소로1-1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3 | 55 | 4 | 특수도로 | 116 | 중로2-70 | 소로1-1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 기정 | 소로 | 3 | 56 | 5 | 특수도로 | 10 | 중로2-72 | 소로2-137 | 보행자전용도로 | -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3,986.2 | - | 3,986.2 | | |
| 기정 | 41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교리 1195 | 1,198.7 | - | 1,198.7 | 경북고 제2007-446호 (2007.1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44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동부리 814 | 1,207.2 | - | 1,207.2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 기정 | 46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동부리 864 | 790.5 | - | 790.5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 기정 | 47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화조리 987 | 789.8 | - | 789.8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나) 공간시설

(1) 광장

(가) 광장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10 | 교차점 광장 | 교통 광장 | 선산 동부리 906 | 8,649.9 (1,915.9) | - | 8,649.9 (1,915.9)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주) ( )는 구역 내 면적임

(2) 공원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6,138.6 | - | 6,138.6 | | |
| 기정 | 109 | 3호 교동공원 | 어린이 공원 | 교리 1194 | 1,869.0 | - | 1,869.0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144 | 교리 제5공원 | 어린이 공원 | 교리 1344 | 2,034.9 | - | 2,034.9 | 구미고 제2008-8호 (2008.1.17) | |
| 기정 | 145 | 동부 제2공원 | 어린이 공원 | 동부리 910 | 2,234.7 | - | 2,234.7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3) 녹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계 | | | | | 15,780.9 | - | 15,780.9 | | |
| 기정 | 58 | 대로1-14호선변 시설녹지 | 완충녹지 | 교리 1379 일원 | 2,926.4 | - | 2,926.4 | 경북도 제1995-63호 (1995.4.14) | |
| 기정 | 74 | 대로1-14호선변 시설녹지 | 완충녹지 | 교리 1356 일원 | 4,467.4 | - | 4,467.4 | 경북도 제2004-76호 (2004.4.8) | |
| 기정 | 75 | 대로1-14호선변 시설녹지 | 완충녹지 | 교리 1369 | 1,818.5 | - | 1,818.5 | 경북도 제2004-76호 (2004.4.8) | |
| 기정 | 76 | 대로1-14호선변 시설녹지 | 완충녹지 | 동부리 835 일원 | 2,193.5 | - | 2,193.5 | 경북도 제2004-76호 (2004.4.8) | |
| 기정 | 77 | 대로1-14호선변 시설녹지 | 완충녹지 | 동부리 912 일원 | 4,375.1 | - | 4,375.1 | 경북도 제2004-76호 (2004.4.8) | |

다) 방재시설

(1) 하천

(가) 하천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 | 연장(㎞) | 면적(㎡) | 최 초 결 정 일 | 비 고 |
|---|---|---|---|---|---|---|---|---|---|---|
| | |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 | |
| 기정 | 2 | 단계천 (교동천) | - | 노상리 구역계 | 동부리 구역계 | - | | 76,027.3 (16,180.3) | 경북고171 (84. 9. 7) | |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2) 유수지

(가) 유수지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 최 초 결 정 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기정 | 5 | 유수지 | 저류 시설 | 교 리 1375 | 2,687.4 | - | 2,687.4 | 구미고 제2008-60호 (2008.8.29) | |

가. 가구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계 | | 97,521.0 | | | |
| 2 | 2 | 6,391.5 | 교리1174 | 390.6 | |
| | | | 교리1175 | 308.7 | |
| | | | 교리1176 | 282.6 | |
| | | | 교리1177 | 282.6 | |
| | | | 교리1178 | 282.4 | |
| | | | 교리1179 | 282.2 | |
| | | | 교리1180 | 281.9 | |
| | | | 교리1181 | 281.9 | |
| | | | 교리1182 | 281.6 | |
| | | | 교리1183 | 281.3 | |
| | | | 교리1184 | 298.9 | |
| | | | 교리1185 | 364.9 | |
| | | | 교리1186 | 298.7 | |
| | | | 교리1187 | 298.8 | |
| | | | 교리1188 | 298.8 | |
| | | | 교리1189 | 298.6 | |
| | | | 교리1190 | 298.5 | |
| | | | 교리1191 | 298.5 | |
| | | | 교리1192 | 298.4 | |
| | | | 교리1193 | 298.2 | |
| | | | 교리1173 | 383.4 | |
| 4 | 4 | 4,189.5 | 교리1236 | 251.1 | |
| | | | 교리1237 | 255.3 | |
| | | | 교리1238 | 255.8 | |
| | | | 교리1239 | 256.2 | |
| | | | 교리1240 | 256.5 | |
| | | | 교리1241 | 257.2 | |
| | | | 교리1242 | 257.4 | |
| | | | 교리1243 | 251.4 | |
| | | | 교리1244 | 263.6 | |
| | | | 교리1245 | 269.8 | |
| | | | 교리1246 | 269.8 | |
| | | | 교리1247 | 269.7 | |
| | | | 교리1248 | 269.9 | |
| | | | 교리1249 | 269.8 | |
| | | | 교리1250 | 269.9 | |
| | | | 교리1235 | 266.1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5 | 5 | 4,167.8 | 교리1252 | 251.2 | |
| | | | 교리1253 | 256.6 | |
| | | | 교리1254 | 259.4 | |
| | | | 교리1255 | 262.1 | |
| | | | 교리1256 | 263.6 | |
| | | | 교리1257 | 265.1 | |
| | | | 교리1258 | 266.7 | |
| | | | 교리1259 | 260.4 | |
| | | | 교리1260 | 254.1 | |
| | | | 교리1261 | 261.3 | |
| | | | 교리1262 | 261.5 | |
| | | | 교리1263 | 262.5 | |
| | | | 교리1264 | 260.9 | |
| | | | 교리1265 | 261.8 | |
| | | | 교리1266 | 261.9 | |
| | | | 교리1251 | 258.7 | |
| 6 | 6 | 2,088.4 | 교리1267 | 253.0 | |
| | | | 교리1268 | 262.2 | |
| | | | 교리1269 | 261.6 | |
| | | | 교리1270 | 261.1 | |
| | | | 교리1271 | 261.1 | |
| | | | 교리1272 | 261.1 | |
| | | | 교리1273 | 262.3 | |
| | | | 교리1274 | 266.0 | |
| 7 | 7 | 2,436.4 | 교리1196 | 321.4 | |
| | | | 교리1197 | 303.1 | |
| | | | 교리1198 | 365.7 | |
| | | | 교리1199 | 447.2 | |
| | | | 교리1200 | 340.8 | |
| | | | 교리1201 | 340.5 | |
| | | | 교리1202 | 317.7 | |
| 10 | 10 | 4,218.8 | 교리1276 | 312.8 | |
| | | | 교리1277 | 361.8 | |
| | | | 교리1278 | 395.5 | |
| | | | 교리1279 | 429.6 | |
| | | | 교리1280 | 359.4 | |
| | | | 교리1281 | 367.1 | |
| | | | 교리1282 | 346.6 | |
| | | | 교리1283 | 464.2 | |
| | | | 교리1284 | 430.1 | |
| | | | 교리1285 | 395.5 | |
| | | | 교리1275 | 356.2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11 | 11 | 3,265.9 | 교리1287 | 281.3 | |
| | | | 교리1288 | 271.2 | |
| | | | 교리1289 | 272.6 | |
| | | | 교리1290 | 274.3 | |
| | | | 교리1291 | 1,105.6 | |
| | | | 교리1292 | 261.9 | |
| | | | 교리1293 | 261.9 | |
| | | | 교리1294 | 262.0 | |
| | | | 교리1286 | 275.1 | |
| 12 | 12 | 1,480.7 | 교리1295 | 226.7 | |
| | | | 교리1296 | 247.8 | |
| | | | 교리1297 | 247.9 | |
| | | | 교리1298 | 248.0 | |
| | | | 교리1299 | 248.1 | |
| | | | 교리1300 | 262.2 | |
| 14 | 14 | 2,088.1 | 교리1303 | 314.6 | |
| | | | 교리1304 | 295.7 | |
| | | | 교리1305 | 295.0 | |
| | | | 교리1306 | 293.7 | |
| | | | 교리1307 | 297.0 | |
| | | | 교리1308 | 296.4 | |
| | | | 교리1309 | 295.7 | |
| 15 | 15 | 1,598.5 | 교리1310 | 320.4 | |
| | | | 교리1311 | 316.8 | |
| | | | 교리1312 | 316.7 | |
| | | | 교리1313 | 316.8 | |
| | | | 교리1314 | 327.8 | |
| 16 | 16 | 2,985.2 | 교리1316 | 282.0 | |
| | | | 교리1317 | 230.4 | |
| | | | 교리1318 | 228.5 | |
| | | | 교리1319 | 226.7 | |
| | | | 교리1320 | 226.5 | |
| | | | 교리1321 | 279.1 | |
| | | | 교리1322 | 266.4 | |
| | | | 교리1323 | 225.7 | |
| | | | 교리1324 | 231.3 | |
| | | | 교리1325 | 233.7 | |
| | | | 교리1326 | 242.9 | |
| | | | 교리1315 | 312.0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21 | 21 | 2,491.9 | 동부리791 | 242.2 | |
| | | | 동부리792 | 238.8 | |
| | | | 동부리793 | 239.8 | |
| | | | 동부리794 | 239.6 | |
| | | | 동부리795 | 250.9 | |
| | | | 동부리796 | 256.1 | |
| | | | 동부리797 | 244.0 | |
| | | | 동부리798 | 251.0 | |
| | | | 동부리799 | 258.8 | |
| | | | 동부리790 | 270.7 | |
| 22 | 22 | 2,190.9 | 동부리801 | 244.1 | |
| | | | 동부리802 | 233.4 | |
| | | | 동부리803 | 213.4 | |
| | | | 동부리804 | 203.5 | |
| | | | 동부리805 | 211.1 | |
| | | | 동부리806 | 240.7 | |
| | | | 동부리807 | 200.1 | |
| | | | 동부리808 | 216.6 | |
| | | | 동부리809 | 216.4 | |
| | | | 동부리800 | 211.6 | |
| 23 | 23 | 1,262.3 | 동부리810 | 328.5 | |
| | | | 동부리811 | 297.4 | |
| | | | 동부리812 | 297.0 | |
| | | | 동부리813 | 339.4 | |
| 24 | 24 | 2,133.0 | 동부리815 | 213.1 | |
| | | | 동부리816 | 202.6 | |
| | | | 동부리817 | 203.5 | |
| | | | 동부리818 | 204.2 | |
| | | | 동부리819 | 208.3 | |
| | | | 동부리820 | 264.8 | |
| | | | 동부리821 | 208.3 | |
| | | | 동부리822 | 208.3 | |
| | | | 동부리823 | 208.4 | |
| | | | 동부리824 | 211.5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25 | 25 | 1,682.0 | 동부리825 | 236.3 | |
| | | | 동부리826 | 236.7 | |
| | | | 동부리827 | 236.7 | |
| | | | 동부리828 | 236.7 | |
| | | | 동부리829 | 236.7 | |
| | | | 동부리830 | 236.7 | |
| | | | 동부리831 | 262.2 | |
| 29 | 29 | 2,356.3 | 동부리842 | 283.2 | |
| | | | 동부리843 | 423.7 | |
| | | | 동부리844 | 438.8 | |
| | | | 동부리845 | 423.8 | |
| | | | 동부리846 | 403.7 | |
| | | | 동부리847 | 383.1 | |
| 30 | 30 | 2,117.8 | 동부리836 | 353.6 | |
| | | | 동부리837 | 352.6 | |
| | | | 동부리838 | 353.6 | |
| | | | 동부리839 | 354.4 | |
| | | | 동부리840 | 355.0 | |
| | | | 동부리841 | 348.6 | |
| 31 | 31 | 2,791.4 | 동부리848 | 322.2 | |
| | | | 동부리849 | 324.7 | |
| | | | 동부리850 | 325.2 | |
| | | | 동부리851 | 325.5 | |
| | | | 동부리852 | 326.0 | |
| | | | 동부리853 | 326.6 | |
| | | | 동부리854 | 434.9 | |
| | | | 동부리855 | 406.3 | |
| 32 | 32 | 1,375.4 | 동부리856 | 396.2 | |
| | | | 동부리857 | 360.8 | |
| | | | 동부리858 | 325.1 | |
| | | | 동부리859 | 293.3 | |
| 34 | 34 | 2,518.8 | 동부리860 | 1,425.1 | |
| | | | 동부리861 | 368.2 | |
| | | | 동부리862 | 368.3 | |
| | | | 동부리863 | 357.2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35 | 35 | 2,003.2 | 동부리865 | 568.3 | |
| | | | 동부리866 | 668.3 | |
| | | | 동부리867 | 388.5 | |
| | | | 동부리868 | 378.1 | |
| 37 | 37 | 2,153.4 | 화조리965 | 319.5 | |
| | | | 화조리966 | 271.8 | |
| | | | 화조리967 | 272.0 | |
| | | | 화조리968 | 271.9 | |
| | | | 화조리969 | 259.1 | |
| | | | 화조리970 | 256.8 | |
| | | | 화조리971 | 259.0 | |
| | | | 화조리972 | 243.3 | |
| 38 | 38 | 3,363.6 | 화조리973 | 522.3 | |
| | | | 화조리974 | 316.1 | |
| | | | 화조리975 | 320.7 | |
| | | | 화조리976 | 320.5 | |
| | | | 화조리977 | 311.7 | |
| | | | 화조리978 | 255.3 | |
| | | | 화조리979 | 308.4 | |
| | | | 화조리980 | 442.1 | |
| | | | 화조리981 | 336.0 | |
| | | | 화조리982 | 230.5 | |
| 39 | 39 | 2,009.1 | 화조리983 | 350.9 | |
| | | | 화조리984 | 225.2 | |
| | | | 화조리985 | 225.1 | |
| | | | 화조리986 | 460.2 | |
| | | | 화조리988 | 522.1 | |
| | | | 화조리989 | 225.6 | |
| 40 | 40 | 3,378.4 | 화조리991 | 213.7 | |
| | | | 화조리992 | 225.3 | |
| | | | 화조리993 | 225.4 | |
| | | | 화조리994 | 225.5 | |
| | | | 화조리995 | 217.6 | |
| | | | 화조리996 | 215.5 | |
| | | | 화조리997 | 224.8 | |
| | | | 화조리998 | 229.0 | |
| | | | 화조리999 | 221.8 | |
| | | | 화조리1000 | 225.5 | |
| | | | 화조리1001 | 264.2 | |
| | | | 화조리1002 | 228.2 | |
| | | | 화조리1003 | 225.6 | |
| | | | 화조리1004 | 223.2 | |
| | | | 화조리990 | 213.1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41 | 41 | 2,201.7 | 화조리1005 | 230.6 | |
| | | | 화조리1006 | 247.0 | |
| | | | 화조리1007 | 245.0 | |
| | | | 화조리1008 | 243.0 | |
| | | | 화조리1009 | 241.2 | |
| | | | 화조리1010 | 333.0 | |
| | | | 화조리1011 | 226.9 | |
| | | | 화조리1012 | 221.7 | |
| | | | 화조리1013 | 213.3 | |
| 42 | 42 | 1,035.2 | 화조리1034 | 197.3 | |
| | | | 화조리1035 | 185.0 | |
| | | | 화조리1036 | 205.6 | |
| | | | 화조리1037 | 231.0 | |
| | | | 화조리1038 | 216.3 | |
| 43 | 43 | 1,920.0 | 화조리1025 | 208.1 | |
| | | | 화조리1026 | 179.6 | |
| | | | 화조리1027 | 179.6 | |
| | | | 화조리1028 | 179.7 | |
| | | | 화조리1029 | 212.7 | |
| | | | 화조리1030 | 206.1 | |
| | | | 화조리1031 | 179.9 | |
| | | | 화조리1032 | 179.3 | |
| | | | 화조리1033 | 179.6 | |
| | | | 화조리1024 | 215.4 | |
| 44 | 44 | 1,872.2 | 화조리1015 | 183.7 | |
| | | | 화조리1016 | 183.8 | |
| | | | 화조리1017 | 186.0 | |
| | | | 화조리1018 | 194.1 | |
| | | | 화조리1019 | 194.9 | |
| | | | 화조리1020 | 197.1 | |
| | | | 화조리1021 | 188.1 | |
| | | | 화조리1022 | 182.9 | |
| | | | 화조리1023 | 181.1 | |
| | | | 화조리1014 | 180.5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46 | 46 | 1,587.4 | 동부리876 | 236.4 | |
| | | | 동부리877 | 255.6 | |
| | | | 동부리878 | 275.0 | |
| | | | 동부리879 | 210.3 | |
| | | | 동부리880 | 202.4 | |
| | | | 동부리881 | 202.7 | |
| | | | 동부리882 | 205.0 | |
| 47 | 47 | 1,741.0 | 동부리883 | 203.8 | |
| | | | 동부리884 | 215.5 | |
| | | | 동부리885 | 216.8 | |
| | | | 동부리886 | 211.4 | |
| | | | 동부리887 | 253.6 | |
| | | | 동부리888 | 217.0 | |
| | | | 동부리889 | 217.9 | |
| | | | 동부리890 | 205.0 | |
| 48 | 48 | 2,811.6 | 동부리869 | 409.6 | |
| | | | 동부리870 | 407.6 | |
| | | | 동부리871 | 407.1 | |
| | | | 동부리872 | 406.8 | |
| | | | 동부리873 | 402.8 | |
| | | | 동부리874 | 400.4 | |
| | | | 동부리875 | 377.3 | |
| 49 | 49 | 3,264.8 | 동부리891 | 273.8 | |
| | | | 동부리892 | 282.3 | |
| | | | 동부리893 | 282.6 | |
| | | | 동부리894 | 282.9 | |
| | | | 동부리895 | 274.6 | |
| | | | 동부리896 | 352.5 | |
| | | | 동부리897 | 354.8 | |
| | | | 동부리898 | 356.9 | |
| | | | 동부리899 | 356.1 | |
| | | | 동부리900 | 448.3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50 | 50 | 3,425.2 | 화조리1039 | 371.8 | |
| | | | 화조리1040 | 339.3 | |
| | | | 화조리1041 | 339.6 | |
| | | | 화조리1042 | 341.1 | |
| | | | 화조리1043 | 370.2 | |
| | | | 화조리1044 | 350.1 | |
| | | | 화조리1045 | 344.5 | |
| | | | 화조리1046 | 341.6 | |
| | | | 화조리1047 | 338.4 | |
| | | | 화조리1048 | 288.6 | |

나) 공동주택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계 | | 127,221.4 | | | |
| 1 | 1 | 45,147.5 | 교리1172 | 45,147.5 | |
| 13 | 13 | 39,697.9 | 교리1301 | 20,575.9 | |
| | | | 교리1302 | 19,122.0 | |
| 28 | 28 | 42,376.0 | 교리1377 | 42,376.0 | |

다) 준주거시설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51 | 51 | 6,596.4 | 교리1376 | 6,596.4 | |

라) 상업시설용지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계 | | 10,205.6 | | | |
| 8 | 8 | 4,776.3 | 교리1203 | 374.5 | |
| | | | 교리1204 | 312.1 | |
| | | | 교리1205 | 312.6 | |
| | | | 교리1206 | 313.3 | |
| | | | 교리1207 | 313.8 | |
| | | | 교리1208 | 314.4 | |
| | | | 교리1209 | 400.7 | |
| | | | 교리1210 | 416.5 | |
| | | | 교리1211 | 287.0 | |
| | | | 교리1212 | 286.9 | |
| | | | 교리1213 | 284.6 | |
| | | | 교리1214 | 285.8 | |
| | | | 교리1215 | 285.8 | |
| | | | 교리1216 | 285.8 | |
| | | | 교리1217 | 302.5 | |
| 9 | 9 | 5,429.3 | 교리1218 | 298.8 | |
| | | | 교리1219 | 286.2 | |
| | | | 교리1220 | 286.6 | |
| | | | 교리1221 | 286.9 | |
| | | | 교리1222 | 287.1 | |
| | | | 교리1223 | 287.3 | |
| | | | 교리1224 | 287.7 | |
| | | | 교리1225 | 330.8 | |
| | | | 교리1226 | 409.0 | |
| | | | 교리1227 | 326.2 | |
| | | | 교리1228 | 327.8 | |
| | | | 교리1229 | 328.9 | |
| | | | 교리1230 | 330.2 | |
| | | | 교리1231 | 331.4 | |
| | | | 교리1232 | 332.8 | |
| | | | 교리1233 | 334.2 | |
| | | | 교리1234 | 357.4 | |

마) 주차장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 적(㎡) | |
| 계 | | 3,986.2 | | | |
| 7 | 7 | 1,198.7 | 교리1195 | 1,198.7 | |
| 24 | 24 | 1,207.2 | 동부리814 | 1,207.2 | |
| 35 | 35 | 790.5 | 동부리864 | 790.5 | |
| 39 | 39 | 789.8 | 화조리987 | 789.8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안)조서(변경있음)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2, 4~7, 10~12, 29~32, 34~35, 37~44, 46~50 | 2, 4~7, 10~12, 29~32, 34~35, 37~44, 46~50 | 용도 | 지정용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r>· 단, 주거용도가 전체 건축연면적의 60%이상이어야 함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2, 4~7, 10~12, 29~32, 34~35, 37~44, 46~50 | 2, 4~7, 10~12, 29~32, 34~35, 37~44, 46~50 | 배 치 | · 중로급(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br>· 건축물의 배치는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동남향, 남서향 위주로 배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 | 형 태 | ·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br>·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한다. 특히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며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가각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여 설치<br>·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br>·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및 곡선형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3이상, 10분의7이하가 되도록 한다.<br>· 옥상은 옥상창고로의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하게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상 및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br>· 건축물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토록 하며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 판넬 외장은 지양한다. |
| | | 색 채 | · 외벽의 색깔은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한다<br>·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 | | 건축선 | –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11 (교리1291) | 11 (교리129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외 불허용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1층 이하 |
| | | 배 치 |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br>·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
| | | 형 태 | | · 주변지역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담장을 설치하며,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한다.<br>· 옥상은 옥상창고로의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하게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상 및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
| | | 색 채 | |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 | | 건축선 | | - |
| 14~25 | 14~25 | 용도 | 지정용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br>· 단, 주거용도가 전체 건축연면적의 40%이상이어야 함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14~25 | 14~25 | 배 치 | · 중로급(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br>· 건축물의 배치는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또는 동남향, 남서향 위주로 배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
| | | 형 태 | ·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br>·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한다. 특히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할 것을 권장하며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가각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을 피하여 설치<br>·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br>· 건축물의 지붕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며, 경사지붕 및 곡선형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3이상, 10분의7이하가 되도록 한다.<br>· 옥상은 옥상창고로의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하게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상 및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br>· 건축물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건축물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토록 하며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 판넬 외장은 지양한다. |
| | | 색 채 | · 외벽의 색깔은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한다<br>·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 | | 건축선 | - |

주) 단독주택용지 B2는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설치 의무대상임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있음)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1 | 1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18층이하 |
| | | 배 치 | | · 건축물 배치는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며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br>· 모든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획지내 모든 아파트 주동으 전면 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br>· 탑상형배치구간은 대로1-14호선 및 중로 1-20호선변에 배치토록 권장 |
| | | 형 태 | |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하되, 경사지붕보다 경관상 우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경사지붕,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한다.<br>· 아파트의 외벽은 입지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을 유도토록 하고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유도하며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토록 한다.<br>· 공동주택용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하고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담장 설치를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1.5m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1 | 1 | 색 채 | | · 외벽의 색깔은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한다<br>·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4m |
| 13(교리 1302) 28 | 13(교리1302) 28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21층 |
| | | 배 치 | | · 건축물 배치는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며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br>· 모든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획지내 모든 아파트 주동으 전면 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br>· 탑상형배치구간은 대로1-14호선 및 중로 1-20호선변에 배치토록 권장 |
| | | 형 태 | |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하되, 경사지붕보다 경관상 우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경사지붕,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한다.<br>· 아파트의 외벽은 입지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을 유도토록 하고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유도하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
|---|---|---|---|---|---|---|---|
| 13(교리 1302) 28 | 13(교리1302) 28 | 형 태 | | 며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토록 한다.<br>· 공동주택용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하고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담장 설치를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1.5m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 | |
| | | 색 채 | | · 외벽의 색깔은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한다<br>·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4m | | |
| 13(교리 1301) | 13(교리1301) | 용도 | 지정용도 |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 | 용적률 | | 기정 | 200% 이하 | 변경 | 250% 이하 |
| | | 높 이 | | 기정 | 21층 | 변경 | - |
| | | 배 치 | | · 건축물 배치는 가로망 계획에 순응하며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br>· 모든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획지내 모든 아파트 주동으 전면 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배치<br>· 탑상형배치구간은 대로1-14호선 및 중로 1-20호선변에 배치토록 권장 | | |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3(교리 1301) | 13(교리1301) | 형 태 | ·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토록 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하되, 경사지붕보다 경관상 우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경사지붕,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토록 한다.<br>· 아파트의 외벽은 입지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도모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을 유도토록 하고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유도하며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토록 한다.<br>· 공동주택용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하고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토록 하며 부대복리시설은 담장 설치를 제한한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여야 할 경우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1.5m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 |
| | | 색 채 | · 외벽의 색깔은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한다<br>· 건물의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한다.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4m |

다) 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51 | 5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 |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외 불허용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51 | 51 | 건폐율 | 60% 이하 | |
| | | 용적률 | 200% 이하 | |
| | | 높 이 | 4층 이하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권장<br>·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권장 | |
| | | 형 태 | · 주변지역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담장을 설치하며,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한다.<br>· 옥상은 옥상창고로의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하게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상 및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 |
| | | 색 채 |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준주거시설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4m |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8~9 | 8~9 | 용도 | 지정용도 |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 불허용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8~9 | 8~9 | 건폐율 | 80% 이하 | |
| | | 용적률 | 1,000% 이하 | |
| | | 높 이 | 13층 이하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br>·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여 배치 | |
| | | 형 태 | ·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15cm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br>·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한다.<br>- 높이 0.6m의 식수대<br>-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br>· 옥상은 옥상창고로의 이용을 지양하고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부득이하게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지상 및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을 설치해야 한다.<br>· 외관 및 입면은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하며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 판넬 외장은 지양한다. | |
| | | 색 채 |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상업시설용지와 접한 모든 도로변 : 1m |

주) 상업시설용지 C는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설치 의무대상임

마) 주차장(변경없음)

|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 계 획 내 용 |
|---|---|---|---|---|
| 7, 24, 35, 39 | 7, 24, 35, 39 | 용도 | 지정용도 | · 시설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용도 |
| | | | 불허용도 | -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높 이 | | 4층 이하 |
| | | 배 치 | | · 차량은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 | 형 태 | | · 차량의 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색 채 | | - |
| | | 건축선 | |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br>· 공동주택13 (교리1301)의 부출입구 개설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 조정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공동주택<br>진출입구 | ·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서의 진출입구는 공동주택 진출입구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br>· 공동주택 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br>· 공동주택13 (교리1301)의 부출입구 개설에 따른 공동주택 진출입구 추가 개설 | |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br>·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의 진출입구간 및 내부구간은 전체 보행체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가능<br>·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하여 동일폭 또는 최소 4m이상으로 조성토록하며, 포장은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함<br>·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
| 보행자전용도로 | ·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br>·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들의 보행동선과 외부 보행동선을 고려한 보행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동선이 우선되는 구조로 설치 | |

2)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공개공지 | · 공개공지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되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br>· 공개공지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경우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br>· 공개공지의 시설기준은 구미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주택용 지 |
| 전면공지 |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건축물의 벽면과 부속시설(캐노피, 회전창 등) 등이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br>·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함 | 공동주택용 지 |
| | · 준주거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함 | 준주거시설용 지 |
| | · 상업시설용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br>·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안됨<br>·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차를 두어서는 안됨 | 상업시설용 지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5.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구미시 고시 제2022-2호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구 미 시 장**

□ **사업내용**

| | |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일원 |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br>○ 명 칭 : 강동 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공사 |
| 3. 사업의 규모 | ○ 면적 : 5,000.10㎡ |

| | |
|---|---|
|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br>○ 성 명 : 구 미 시 장 |
| 5. 사업시행기간 |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3.06.25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아래 조서와 같음.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면적(㎡) | | 토지소유자 (등기부상) |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등기부상) | | | 비고 |
|---|---|---|---|---|---|---|---|---|---|---|---|
| | 동 | 지번 |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합 계 | | | | 5,000.10 | 5,000.10 | | | | | | |
| 1 | 산동읍 신당리 | 1724 | 대 | 5,000.10 | 5,000.10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 | - | - | |

※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0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상주시 고시 제2022-3호

#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산13-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신설 | 우산1 | 은척배수지 | 외서면 우산리 산13-1번지 일원 | - | 증) 1,110 | 1,110 | - | |

■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우산1 | 은척배수지 | • 배수지 신설<br>A=1,110㎡ | •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함 |

##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 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2022-1호

#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일원에 도로 및 문화공원 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공원 및 공원 진입도로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함

**2. 위치** : 지보면 마산리 산 113-1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로 신설 : B=8m, L=170m

- 공원(문화공원) 신설 : A=19,975㎡

**4. 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170 | 마산리 906-1 | 마산리 산107 | 일반도로 | - | - | |

■ 도로 결정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 소로 2-1 | • 노선 신설<br>• B=8m, L=170m | • 비룡산 문화공원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이 공원 진입에 용이하도록 진입도로를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 | 비룡산 전망대공원 | 문화공원 | 지보면 마산리 | - | 증)19,975 | 19,975 | - | |

■ 공원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비룡산 전망대공원 | • 문화공원 신설<br>• A = 19,975㎡ | • 삼강문화단지와 회룡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을 신설 하고자 함 |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경주시 공고 제2022-21호

# 경주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경주시 충효동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경 주 시 장**

**1. 열람기간** : 2022.1.6. ~ 2022.01.20.(초일불산입,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경주시청 도로과, 시홈페이지(고시/공고)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 | 연장(㎞)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 | |
| 계 | -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 | | | 2.931 | 43,612 | - | 철탑8기: 1,379㎡(기설존치2기:187㎡,이설6기:1,192㎡) 선하부지: 42,233㎡(기설존치:1,224㎡, 이설:41,009㎡) |
| 신설 | A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 경주시 충효동 산159-4 | 경주시 충효동 120-27 | - | 1.548 | 22,986 | - | 철탑4기: 677㎡(기설존치1기:81㎡, 이설3기:596㎡) 선하부지: 22,309㎡(기설존치:1,094㎡, 이설:21,215㎡) |
| 신설 | B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 경주시 충효동 1300-12 | 경주시 충효동 산74-8 | - | 1.383 | 20,626 | - | 철탑4기: 702㎡(기설존치1기:106㎡, 이설3기:596㎡) 선하부지: 19,924㎡(기설존치:130㎡, 이설:19,794㎡) |

**4. 관계도서 등의 게재는 생략하며(열람장소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청 도로과(☎054-779-6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공고 제2022-8호

#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성주군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및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성 주 군 수**

□ **공인 폐기 및 등록 사유** :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 및 신설

□ **공인 폐기 및 등록일** : 2022년 1월 4일

□ **폐기 및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구 분 | 공 인 명 | 규격 및 서체 | 인 영 |
|---|---|---|---|
| 폐 기 | 성주군미래전략담당관<br>일상경비출납원인 | 2㎝ 정방형<br>소전체 |  |
| 등 록 | 성주군미래지역활력과<br>일상경비출납원인 | 2㎝ 정방형<br>소전체 |  |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